

제433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조세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16일(월)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0)
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0)
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9)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1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1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2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3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상정된 안건

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0) 3
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3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0)
..... 3
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9) 3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3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3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3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 3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3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3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3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3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3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3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3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3
1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4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4
1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4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4
2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4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4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4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4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4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4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4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4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4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4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4
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4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4
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북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4
3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4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7건의 법률안을 시간 되는 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평소하고 똑같습니다.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답변하고 합의가 된 내용들은 안건 전체 심사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 사용해 주시고요. 배석하신 분들이 다른 부처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말씀하실 때에 소속·직위·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0)
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0)
4.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9)
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1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1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4)
2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6)
2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09)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8)
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7)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해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북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3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10시03분)

○소위원장 박수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7항까지 3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위 자료 1권부터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조세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 관세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하는 박성훈 의원안입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관세사 등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사 등의 광고 심사를 위해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관세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소비자 보호 중심의 일반 표시·광고 규제만으로 통관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우며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관세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수입 질서를 확립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단부에, 개정안은 징계와 별도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호는 관세사 업무에 관하여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서 다른 과장 또는 부당한 광고 유형과는 구분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한 측면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인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도 동일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벌칙 신설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작년 9월 조세소위를 통해 세무사 등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대안이 의결된 후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두 번째 항목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의 심사를 위한 광고심사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광고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광고에 대한 심사를 위해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정부는 관세사 시장 규모, 숫자 등을 감안할 때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이 광고 기준 위반에 대해 징계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정 광고심사위원회를 통한 전문적인 심사 기준 마련 및 심사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거짓 광고 등에 대한 금지 규정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서도 광고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법에서는 법정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위반 시 형사처벌이 있는 변호사나 변리사의 경우에는 법정 광고심사위원회 규정이 있고요 세무사법과 그 외 노무사법은 위반 시 형사처벌이 없기 때문에 법정 광고심사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법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사처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광고심사위원회 규정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작년에 광고 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정기국회 때 세무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의를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법에서 광고 기준을 두는 게 통과된 점 그리고 관세서비스에 대해서도 광고시장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광고 기준 마련에 저희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광고심사위원회하고 벌칙 규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세무사 논의하실 때도 광고심사위원회 설립과 벌칙 규정을 저희가 달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세사의 경우에는 세무사보다 좀 더 현재 시장 자체가 약한 상황이고 해서 이와 관련된 우려가 더 적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법 논의와 동일하게 광고심사위원회 설립과 벌칙 규정은 현재로서는 두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변호사법의 현행 광고 규제와 관련된 규정을 예시로 들어서 비교하고 있는데 변호사법의 광고 규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회·세무사회·관세사회 다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데 가령 변호사협회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의 수임 단가를 비교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변호사 평가를 제공하는 법률 플랫폼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임되어 있는 이 광고 규제를 활용해서 불법화시키고 그걸 이용하는 회원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차단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변호사법 23조 규정에 대한 개정안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변호사법 23조 광고 규정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는 이 광고 규제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익단체인 민간협회에 그냥 모든 권한을 줄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부가 정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허용되는 광고와 허용되지 않는 광고의 범위를 소비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논의되고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그래서 이 관세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하나 11조의2 4항에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관세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면 더 타당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광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 사항이라서 이소영 위원님 말씀처럼 광고에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정부가 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대하는 것도 이소영 위원님하고 똑같이 관세사회가 광고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운영 규정을 두는 것, 광고심사위원회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광고심사위원회는 반대하고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정하는 광고라고 규정돼 있고 지금 이 법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관세사회가 정하는 이런 거는 없

는 것 아닙니까?

○**이소영 위원** 있습니다. 11조의2 4항에 있습니다. 변호사법과 유사한 구조로 안은 지금 마련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회들이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관세사들의 이익과 소비자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관세사를 중심으로 규정을 운영하고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차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분야에서 답습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아까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정부 측 의견을 주셨고 이걸 관세사회가 정한다고 한 2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안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2항에서는 그 내용이 없고요 3항하고 4항에……

○**소위원장 박수영** 3항하고 4항, 그렇지. 3항의 광고심사위원회는 반대하셨고……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반대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수영** 4항에 관세사회가 정한다고 하는 규정은……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다음에 4항도 광고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광고심사위원회를……

○**소위원장 박수영** 한꺼번에 같이 둘 다 반대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둘 다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 4항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을 빼고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소위원장 박수영** 자, 다른 위원님들은……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차관님, 이 벌칙 조항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에서 행정형벌 합리화하는 기조가 있는데 가령 변호사법에 이런 벌칙 조항이 있다고 그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서 굳이 형벌로 규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어떠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전반적으로 정부 전체의 입장은 가급적 형벌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벌로 전환하는 게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관세사와 관련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여쭙보신 대로 다른 일반 형법이나 변호사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법무부랑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벌칙 부분은 이소영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기 는 하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벌칙보다는 과태료나 행정벌이 더 낫다는 입장을 줬고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대통령령에 넘기는 것으로 우리 개정안에 넣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대령으로 넘기는 것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관세사회가 법정단체인가요? 임의단체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관세사회 법정단체지요. 관세사법에 나와 있는 단체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법정단체입니다.

○유상범 위원 기본적으로 법정단체를 만들었으면 법정단체 그 안에서 운영과 내부의 규정을 정하는 것은 법정단체 내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소영 위원의 지적이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변호사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관세사회는 거래하는 사람들 자체가 특정한 수출입업체로만 제한이 돼 있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것을 변호사단체와 동일하게 부작용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게 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광고 또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정할 때는 각 기관의 자치에 따른 내부 규율이 중요하고 기준이 현격히 위반됐을 때 정부의 관리감독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 한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특정한 광고심사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니, 대통령령이 그렇게나 한가합니까? 나는 이거 이렇게까지 정부가 직접 내부를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연 광고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대상이 제한돼 있고 운영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광고를 허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봐요. 변리사나 변호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만 관세사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관련된 업종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광고까지 필요하냐? 나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수석전문위원 의견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일단 그동안 관세사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광고를 자유롭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서 광고를 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시다. 다만 그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통계나 현황도 파악되기가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하더라도 규정이 없다 보니 제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개정이 나오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전자상거래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세사의 중요성이 기존의 세무사나 변호사만큼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부분으로 확장이 되었던 거지요. 적절한 광고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한테, 문제는 광고 심사기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대통령령에다가 넘기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역이라고 하면 변호사나 또 세무사와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광고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정부는 관세사 시장 규모나 숫자를 봤을 때 별도

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 관세사들이거든요. 법정단체가 법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부분,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과 이 기구가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좀 구분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변호사법이나 변리사법 그리고 세무사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심사위원회와 관세사를 다르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뉘는데요, 두루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먼저 손 들어 주셔서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소영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세사들도 현실적으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합리적 규제가 필요는 할 거 같습니다. 다만 그 규제 방식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감독관청이 이걸 하도록 할 거냐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방향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심사위원회를 뒤 가지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되어 있느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세무사회 같은 경우에는 광고심사위원회가 없거든요. 세무사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도 훨씬 더 많고 또 여러 역량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갖춰져 있는 단체라고 보는데 세무사회는 지금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관세사를 자율 규제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관련해 가지고 민간단체의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자율 규제에 맡기는 거고 그게 안 돼 있으면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감독관청에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행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당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시나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현재 작년에 통과된 세무사법에 보면 세무사법 17조 3항에 보면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그 대령에 가 보면 세부적으로 법에 규정이 안 된, 세부적인 사항을 몇 가지 허위광고라든지 그런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시행령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안도걸 위원 세무사회는 자체 광고심사위원회가 없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현재 세무사회는 세무사 자체 규정으로 세무사광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자체 규정으로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법에서는 법상의 어떤 심의위원회를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요건에 대해서는 일단 바로 세무사회에 넘기지는 않고 대령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 규정해 주지 않더라도 관세사회에서 자율 규칙을 제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광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거라면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과 이소영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는데 이소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마는 오기형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저희도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각종 광고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가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판단 기준과 세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좀 있는데 일단 형사 책임을 계속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상관없이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라면 지금 세무사법 정도로 가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형사법 확대가 아닌 형식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문제가 된다면 고유한 직역 단체 내부에서 자체 징계든 뭐든 이런 권한을 주고 갈 수는 있는데 전통적으로 변호사회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위반을 형사법 쪽까지 갈 거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서로 같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래에 나왔던 변호사협회의 이야기가, 아까 서로 다른 식의 논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변호사회에서 로톡이라는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회의 징계권을 가지고 좀 과도하게 제한해서 그래서 저희도 타다 논쟁 지난번에 했듯이 로톡과 관련한 논쟁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오히려 못 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직역 단체들이 각종 징계권을 좀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고 그 사례를 갖고 지금 논쟁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그렇다면 별도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어떠나라는 아이디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모든 논쟁의 전제는 도대체 각 직역별로 어떤 허위 광고를 계속 형사처벌을 할 거냐,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한 번 하고 이걸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아이디어로 풀어 줄 수 있다면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할 거냐 이 이야기를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제재를 할 거냐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로 하도록 할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로 풀 수 있으면 그냥 놔둬도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잘 적용되도록 하는 아이디어 논의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세무사와 변리사의 차별의 이유 내지는 관세사회와 변호사협회의 차별의 이유를 어떻게 합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축적돼야 판단을 좀 명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발언은 다 하신 것 같고……

이소영 위원님 아직 안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소영 위원 이게 형사처벌 얘기도 나오고 누가 이 세부 기준을 정할 거냐 하는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문제랑 결합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민간 단체가 자율 규제에 정한 광고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 모순인 거기 때문에 양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법률에서 1호부터 7호까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밖의 사유에 해당

하는 7호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고 해서 그게 관세사회가 자율 규제로 정하면 그건 옳은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부당한 개입이나, 일반적인 방식은 오히려 법률에서 정한 기타 사유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게 더 일반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제기하는 우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제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변호사법하고 관세사법 개정안이 판박이 사유들인데요. 이 변호사법에서도 5페이지의 7호 그밖에 공정한 수입 질서를 해치거나 이런 우려가 있는 광고, 이게 무한대의 무적의 권한을 줘서 변협이 로톡을 포함한 다수의 신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광고 기준을 마련하면서 위법하다고 징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결정까지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 결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이익 단체에 의해서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직역 단체가 전문성은 있을 수 있는데 소비자들과 그 직역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단체다, 왜냐하면 이익 단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뭐가 가능하고 뭐가 아닌지 소비자의 후생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주는 게 오히려 이런 논란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는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석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을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단은 저희가 광고 기준을 변호사법이나 변리사법, 세무사법처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통관을 하려는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 홍보나 이런 부분은 지금의 표시광고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세사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형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소위에서 나온 논의 내용을 볼 때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사회에서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법정으로 안 두면 사실 지금은 관세사협회에서 내규로 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정함에 있어서 일단 형벌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맞고요. 다만 여러 관세사협회나 협회에서 협회의 이득에 따라서 어떤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관세사협회가 정한 정관이나 세부 양형이라든가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관으로 정하면 그 정관에 대해서 그게 적정한 정관인지 적정한 기준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변호사법, 변리사법, 관세사법을 비교할 게 아니라 변호사법하고 세무사법 그다음에 관세사법을 비교해야, 변리사법은 변호사법을 거의 따라가는 거니까 동일한 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개정했던 세무사법하고 비교해 보는 표가 더 유용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트레이드오프가 되는 것이 법정단체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오늘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알아서 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처벌을 하게 할 것이냐 그게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너무 과도하니까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할 것이냐 또 대령에 할 것이냐 자율로 정관에 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바로 합의되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각자 위원님들도 돌아가셔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고민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9페이지입니다.

관세법인 인적 설립요건 완화에 대한 이인선 의원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되 분사무소 인적 설립요건은 현행과 같이 5명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세법인과 개인사무소의 10년간 사무소 수를 보면 관세법인 증가율이 10.5%인 반면 개인사무소 증가율은 13.9%입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관세법인 설립 인적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로 관세법인 설립 인적요건, 기타 자격사의 법인설립 인적요건과의 형평성도 아울러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자격사의 법인 설립 인적요건을 살펴보면, 표에 나와 있는데요, 공인노무사는 2명 이상, 세무사는 3명 이상, 관세사·변리사 등은 5명 이상, 변호사·공인회계사는 7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작년 조세소위를 통해 세무법인의 설립 인적요건을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면서 5명 이상의 세무사를 둔 세무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이 의결이 돼서 올해 개정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 관세사회의 입장을 들어 보면 관세법인 설립 인적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업계 경쟁 촉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소규모 관세법인의 설립 등 청년 관세사의 창업 활성화, 종합적·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관세법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인의 증가율 둔화에 따른 인적 설립요건의 완화 필요성, 세무법인 설립요건을 3명으로 완화한 최근 세무사법 개정 등 기타 자격사의 설립 인적요건 완화 추세 및 각 자격사의 현행 인적요건과의 형평성, 각 자격사별 규모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관세법인의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 대신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서 관세 서비스 품질의 공백을 방지하는 차원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무사와 관련된 동일한 내용으로서 정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사법 개정할 때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세무사법하고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은 14페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규정을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15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범 처벌법의 처벌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규정으로 일원화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현행 규정에 근거한 과태료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현행은 신고의무위반금액이 50억 이하일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50억 초과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으로 규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의무위반금액 합계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로 50억 이하랑 50억 초과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규정의 일원화는 신고의무위반금액에 비례한 균형적인 제재가 가능하며, 특히 해당 금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현재 발생할 수 있었던 제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의 형벌 규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잠재적인 위반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과태료보다 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 탈루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유지하는 실익도 있으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형벌이 과잉금지의 원칙상 과도한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조세소위 당시 해당 조문 이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개선 방안 중 경제형벌을 감경하는 대신 실질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에 보고하고 상의하도록 논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을 의결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일한 취지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도 이 부분에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벌에서 행정형벌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고의무 위반입니다. 보고의무 위반의 형벌은 기본적으로 과도하다, 그러므로 행정형벌로 바꾸자는 게 저희 정부 기조로서 현재 계속 법안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그런 취지에서 보면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기본적으로 보고의무 안 했다고 형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제도를 이렇게 보면 50억 이상이 되면 보고의무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지는 게 아니라 루프홀을 만들어 준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 속에서도 경제형벌을 감경하는 대신에 실질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언가 다른 대책들이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지점에 대한 대안이 재정부에서 먼저 검토된 게 있으면 그 이야기가 함께 돼야 되지 않을까?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위임받게 됩니다. 과태료가 되면 반복적인 행위에도 계속적인 부과가 가능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경중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 때 50억 이상의 경우는 좀 더 가중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가중하는 것을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다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경?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런데 법률에 정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법률에서는 최고한도를 정해 놓고 그 구체적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 가중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최대한도 내에서.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말씀은 지금 벌금형을 때리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위반 사항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과징금처럼 계속 수회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위중한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또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16페이지의 두 번째 동그라미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17페이지의 ‘한편’ 중에 그 아래 부분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형벌이 과잉금지의 원칙상 과도한 측면도 있다, 혹시 이 부분이 16페이지 부분하고 조화롭게 해석이 가능한 말씀일까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페이지 부분은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지속됐을 때의 그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신고의무가 50억하고 50억 이상하고 차이가 날 때 50억보다 좀 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서 볼 때 제재의 침해 최소성에 비추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최기상 위원** 16페이지 부분이 실제 사례 많이…… 가능한 사례인가요? 과태료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결국은 형벌보다 처벌 정도가 더 높아진다 이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것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벌, 특히나 징역까지 가는 이런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는 봅니다.

다만 저희가 궁금해하는 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법이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을 제정했던 당시의 의도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50억 기준을 없앴으로 인해서 그동안 50억을 초과한 신고의무자들에게 심리적 위화 효과를 지어 왔던 부분들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될 경우에 과연 과태료만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기재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처음에 법에 50억 기준은 저희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준비돼 있나요?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감은 아까 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형벌의 경우에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발견되면 최대 50% 상향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과태료는 매번 똑같은, 이 미신고금액에 대해서 10%까지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쌓이면 결국에는 그 금액을 결과적으로는 다 환수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 유인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몇 가지 말씀 주신 것처럼 50억 이상에서 좀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하면 효과는 훨씬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담당 국장님이 아마 추가로 설명하시려는 것 같은데 소속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조세정책관입니다.

과태료 반복은 미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과거의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5년 동안 계속 미신고한 사람 같은 경우에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지만 벌금을 매길 적에는 최고의 50%까지 각각 벌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더 큰 경우가 과거의 위반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미래에만 담보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147조 2항에 보면 위반 횟수를 고려해서 과태료의 금액을 50% 범위에서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방금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반복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소영 위원** 또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기본

이기 때문에 올해 신고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고 2년 후에 또 신고 위반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적발됐을 때는 형사처벌은 여러 해를 합쳐서 한 번만 가중이 되지만—그러니까 법정형에 한 번 가중되지만—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염려하신 것은 형벌을 과태료로 바꾸면 50억 이상 위반자들에 대한 주의·경고가 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는 건데 기재부 답변은 그게 아니라 과태료를 수차·수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벌보다 더 강한 제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것 참 되게 어려운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한번……

○소위원장 박수영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상범 위원님이 이해 안 가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아니요. 뭐냐 하면 미신고 행위는 한번 미신고를 하고 나면 상태범 이에요. 상태범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미신고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은 미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미신고되는 것을 별개의 행위처럼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과태료도 미신고를 했을 때 그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 1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신고의무를 부과했는데 또 미신고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법 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맞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미신고가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미신고가 계속 반복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러분의 논리가, 이 상황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같은데요.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위원님, 해외계좌 신고는 매년 6월에 신고의무가 새로 부여되는……

○유상범 위원 매년 부과됩니까?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예, 매년 6월에 신고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매년 별도로 발생해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매년……

○유상범 위원 그래서 사실은 매년 의무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서 누락하지 말아야 될 게 미신고가 확인이 됐어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신고하라고 지시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 명령 미이행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 행위가 있나요?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위원님, 저게 자진신고기 때문에 신고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추후에 확인됐을 때 일이고, 자진신고입니다.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과세 가중은 추후에 미신고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그러면 알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연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 16페이지 각주 10번에 경합범과 처벌례를 두셨는데, 최근에 형법이 바뀌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습니다. 원래 경합범 가중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가중이 있고 37조 후단 경합범 가중이 있거든요. 그게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고……

2020년 범죄에 대해서 한 번 처벌을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2022년에 또 적발이 되면 그냥 따로 독립적으로 또 처벌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2024년에 신고 안 했을 때 독립적으로 처벌하면 되는 건데,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 그런 경우는 이것처럼 2분의 1까지밖에 못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섞어서 이해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들어서 여쭙보네요.

○소위원장 박수영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형벌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보시면 만약에 벌금을 한 번 매겼는데 미래에 그 사람이 또 했다고 하면 그다음 것은 당연히 벌금을 매길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과거 5년 치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 5년 치 위반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적에 그중에 가장 센 벌금의 50%를 나머지 벌금의 총합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개념으로 설명드린 거지, 벌금을 매긴 다음에 또 미래에 위반이 있을 때 벌금을 매기자 그런 취지로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크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이런 일들은 다른 유형에 저희도 다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소위원장 박수영 20%라는 과태료 비율은 다른 법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과태료를 20%나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게 법에는 20% 이하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10%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시행령에서 10% 잡아 났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법률을 20%로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다른 법률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 과태료가 20%까지 올라간 것을 저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일반적으로 20%보다 낮은데요. 그런데 자본시장법 이런 것은 높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뽑지는 않았는데요. 주가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높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사실 20% 이하로 돼 있는 경

향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또 말씀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자료 데이터를 같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것 데이터를 본 다음에 한번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 자체에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정돈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도 여러 가지 있었고 정부에서도 자료를 조금 더 정리하고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9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임원·지배인의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예외규정 신설에 관한 정부안입니다.

24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지배인의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예기치 못한 임원·지배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발생 후 6개월 내에 해당 임원 등을 교체하는 경우 면허 취소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임원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예외규정이 없어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인한 제조면허 취소 사유 발생 시 법인 전체의 제조면허가 취소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에 과도한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까지 임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주류 제조면허의 제한 및 취소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도 임원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 교체 시 주류 제조면허의 제한 또는 취소에 대한 유예기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6개월 이내에 임원 등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타 법률에서도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무사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입법 사례가 여럿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주류 제조회사가 임원의 예기치 못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내에 임원의 교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합리적인……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기본적으로 임원들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면허 취소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적정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임원의 경우인데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등기 임원도 임원에 포함시킨다는 이 규정을 좀 정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라는 것이 규모가 크든 안 크든 간에 기본적으로 등기 임원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비등기 임원까지 이렇게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 법이 갖고 있는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24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 법을 통과시킨 내용이 등기 임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의 대표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기도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것은 현행 그대로 일단은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임원이 무슨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아예 그렇게 실질적 경영책임자라고 하는 범위를 제한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법 규정을 보면 법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판단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지 않습니까, 행정부나 이런 데서 판단하는 게? 이런 것은 차라리 범위를 제한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으로 지배하는 사람의 일탈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을……

○유상범 위원 이 규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5항의 규정을 보면 ‘임원·지배인 등이’ 이렇게만 규정돼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입법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규정돼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등기 임원이면 전무·상무 이런 사람들도 다 임원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조만희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관련된 일이 벌어지면 그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요건에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입법 목적은 결국 실질적으로 임원으로 등기는 안 하고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처벌하자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규정에는 ‘임원·지배인 등’ 이렇게 써 놓고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 사주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자’ 이렇게 말을 해 버리니까 법 규정과 여러분의 입

법 목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괴리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규정은 주류면허법 제7조에 있습니다. 7조 3호를 보시면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임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라가 보면 등기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이렇게 법인세법 시행령이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질적 지배력을 한 사람이 행사해요. 밑에는 월급쟁이에 불과해. 사장, 부사장, 전무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임원 등이 이렇게 여기 법률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면 바로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차관계서 하시는 말씀은 실제 오너가 그렇게 등기를 안 하고 숨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가 크다는 얘기지, 지금 규정상.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규정이라면, 처벌을 한다는 건 2년 전에 이미 개정된 내용이고요.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 운영하다 보니 대처하지 못한 상무의 잘못으로 회사가 취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상무를 교체하면 회사가 유지되도록 하자는 게 이번의 개정안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모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상 범위를 제한해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입법취지는 실제 지배자에게 그 문제가 발생하면 등기가 안 됐더라도 면허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법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해 보니까, 말씀드린 상무·전무가 나오니까 또 예외를 둔다는 이 입법이 양식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이유는 주류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그 주류회사와 관련된 행위를 하면 그때는 면허 취소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일단 양벌규정이 작동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것과 관련 없이 다른 법에서 위반을 받는 것, 본인이 소득세를 잘못 냈는데 조세범 처벌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 회사를 면허 취소하는 걸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현행 다른 법에서 양벌규정으로 이 사람을 포섭함으로써 이 사람이 잘못하면 회사가 취소되는 규정은 이미 있고요. 다만 그것과 무관한, 업무와 관련 없이 다른 용도로 조세범 처벌법의 대상이 됐을 때 이 주류회사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그건 과잉입법이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이것을 배제해서 6개월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허용……

○유상범 위원 그렇게 입법을 하는 게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 규정을 적용해서 입법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과잉입법이다 싶으니까 다시 예외규정을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 형식이 맞냐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데 처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큰 거고요.

○**유상범 위원** 처음 목적이 그거라면 등기 안 된 사람이, 실제 오너가 뒤에 숨어서 그런 일을 벌일 때 처벌하겠다는 규정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것은 본인의 업무와 주류회사의 일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고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이 그게 아닌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걸리면 면허 취소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을 저희가 예외규정을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기형 위원** 정리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주류회사의 행위와 관련해서 임원으로 간주되는 자들이 연 관돼 있으면 주류회사와 임원으로 간주되는 자들이 양벌규정으로 해서 함께 책임을 진다. 그래서 주류 행위, 그 주류회사의 주된 영업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해서 처벌 범위가 확대가 돼 있다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임원 범위가 확대돼 있다 보니까 주류회사의 행위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임원이 사고가 났을 때 그로 인해서 주류 영업을 정지되는 것이 좀 과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 6개월 유예기간을 주자 이런 취지시군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을 보니까 임원까지 포함해서 결격사유 규정을 하는 취지 자체가, 지금 이것과 걸린 결격사유가 어떤 거냐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세포탈한 경우, 이 네 가지 사유에 걸리는 결격사유인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면허 취소가 됐다,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법인을 해산하고 면허 취소가 될 만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다른 회사를 차려서 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표자면 결격사유에 걸린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도, 그런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회로 범위를 넓힌 것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소위원장 박수영** 사실상의 지배력 때문에……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를 적용했을 때……

○**유상범 위원** 제가 입장을 정리할게요. 이렇게 임원, 비등기 임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여러 회사에 관계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행위를 하다 적발돼서 처벌받더라도 회사가 문을 닫지는 안 하겠다. 취지는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렇게 확대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더 문제라는 거지.

○**소위원장 박수영** 정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규정 자체는 동의하는데, 다만 이 조항 자체를 새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유상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임원이냐, 등기 임원이냐, 미등기, 사실상 지배하는 이사냐 이 이슈하고 개인의 잘못으로 법인까지 면허 취소하는 문제하고는 약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냈던 개인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법인까지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미등기 이사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추가로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지금 이 개정안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7조 3호에서…… 24페이지의 각주 12를 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원의 범위를 대령으로 법에서 위임을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은 업추비 범위에 대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업추비를 기업의 업추비로 부담하면 안 된다이기 때문에 사실 주류 면허법에서 임원을 제한해야 되는 부분하고 법인세법을 인용하는 부분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그냥 대령에서 이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면허 제한 등이 되게 광범위하게 넓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시행령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적정한 임원들을 제한해서 시행령에다 규정해야 되는데 무작정 법인세법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차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냥 통과시켜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섞여서 논의되다 보니까 복잡해졌는데 앞부분, 정부가 제안한 1번 법률, 개인의 잘못으로 법인이 면허 취소되는 부분을 막는 그것은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를 하고 그 뒤의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시행령이 잘못된 것인지 정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안건은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0페이지, 주류 기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에 관한 정부안입니다.

3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주류 기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에 대한 내용으로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주류 판매업자는 신고의 무자에서 제외하고 신고대상을 주류 제조·저장 용기로 한정하되 이에 맞춰 과태료 부과요건을 현재는 ‘미검정 용기 등을 사용한 자’에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를 사용한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주류 기기 등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사전에 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검정 용기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 등 관련 규제를 주류의 제조 및 저장 단계로 집중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와 품질 관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류 판매업자에게는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부담을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신고 수리를 받지 않고 용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은 후 용기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신고를 통해 수리를 받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법은 주류 제조자 부담 완화를 위해 용기 등에 대한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바꾸려는 정부안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상범 위원 그런데 검정을 신고로 바꾸면 차이가 뭐예요? 내가 잘 몰라서 묻는데, 검정을 신고로 바꾸면 행정절차상에서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검정은 세무서장이 법적 요건을 부합하는지 실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해야 되고, 신고는 신고 내용이 법적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신고는 신고 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수리된 걸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정을 신고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국세청 국장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장님, 말씀……

○유상범 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 아니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국세청 얘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심욱기 이것은……

○소위원장 박수영 직·성명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욱기입니다.

검정이라는 용어도 그렇고요, 굳이 이렇게 검정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세제실에 신고제도로 변경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 왔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검정이지만 형식적인 검정으로 이루어졌지 사실상 신고처럼 운영되어 왔다 이런 얘기네요?

○국세청법인납세국장 심욱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출장을 한번 가야 되는 거지요, 검정제도하에서는 가서 봐야 되니까. 그게 실사하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35페이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입니다.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하는 정부안입니다.

36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및 납세자에게 일시보관 장부 등을 반환할 때 세

무공무원이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경우 해당 원본의 개념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37페이지, 현황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원본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상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 등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원본 종이문서로 보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스캔하여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문서 보관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문서에 관한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원본의 개념에 전자화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46조에서만 원본의 범위에 전자화문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세기본법 중에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도 있고 사업자가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대조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종이문서 관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법안은 종이 생산과 보관을 줄여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내용의 정부안입니다. 정부안대로 심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1페이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부담 및 소득·자산재분배 영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4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부담 및 소득·자산 재분배 영향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영진 의원안은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고 문진석 의원, 황운하 의원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자산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근거를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서는 기재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동 계획에는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 방향, 비감면·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재정운용계획과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조세부담 수준을 정부는 현재는 재정 여건에 있는 연도별 조세부담률로 갈음해서 조세부담 수준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세수 전망에 있어서 연도별 조세부담률 수준을 하단부에 보면 예측치를 전체적인 조세부담률 수준을 예측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참고로 24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6%로 OECD 평균 25.0% 대비 낮은 수준이고 코로나 이후 자산세수 증가 등으로 22년 22.1%까지 증가했으나 경기둔화, 감세 영향으로 24년 17.6%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소득계층별 조세부담과 조세정책이 소득·자산의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면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소득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 계층의 경제적 상황을 실효성 있게 반영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또는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9페이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세목별로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나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함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삼 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관련 통계 인프라를 정비한 다음 소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세목에 대한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는 각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조세부담 수준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파악된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이 소득세 개편 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소득세부터라도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조세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조세정책 운용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서류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에서 작년에 이미 김영환 위원님이 많이 제기하셨고 여러 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조세지출 관련해서는 일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할 수 있는 게 주요한 소득세에 대해서 공제 감면해서 이게 어떻게 귀착되는지를 과거 신고 데이터를 통해서 올해 저희가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자료도 중장기 방향성

에 기초해서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과거 데이터를 갖고, 이미 실현된 조세정책을 갖고 저희가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셨는데요. 소득세 등에 대한 주요 계층별 소득계층 귀착 분석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세지출 결산서에 최대한 포함하되 그것도 보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방향에 이거를 담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이 일단 과거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열심히 하겠다, 다만 미래 데이터를 중장기 예측에 넣기에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인프라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평소 많이 주장하시던 거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환 위원 조세지출 결산서에 조세 귀착효과를 분석하는 거는 과거 데이터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의미를 좀 살려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 시장소득이 있고 가처분소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재정정책이 있고 조세정책이 있잖아요. 재정·조세 정책 둘 다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시장·가처분소득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중에 저희들이 풀썩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불평등을 해소시켜 주는 그 감축의 정도가 유럽이나 기타 OECD 국가들보다 되게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조세정책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느냐, 최소한 의미 부여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를 테면 오기형 위원님께서…… 그때 29년도인가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자산 과세가 GDP 대비 계속 줄어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조세형평성 문제나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는 정부의 노력이 없다는 것의 방증이잖아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조세지출 중장기계획을 넣었을 때 과연 자산 과세는 어떻게 할 거며 소득 과세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은 재정경제부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걸리지 않더라도 이 계획에 조세정책의 일반적인 경로를 재정경제부가 밝혀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영진 의원님 안을 살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살려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실제 매우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경로만 확인할 뿐이지 이것을 파악하기에는 되게 힘들지 않겠나, 그것도 5년 단위로 찍는 것은. 다만 어떤 목표와 어떻게 조세정책을 크게, 뭐 굵직한 방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관련해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보면 조세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년 시계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이 실립니다.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이 실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산 과세는 어떻게 하고 소득 과세는 어떻게 하고 감면세는 어떻게 하는 게 전반적인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감면 운용 방향에서도 감면을 어떻게 줄이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담

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로 나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5년 동안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줘야 향후에 자산 불평등이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정도만 실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영진 의원안 중 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소득계층별 재원 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 이런 것 정도는 답을 수 있지 않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국가재정법이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국세기본법……

○**김영환 위원** 국세기본법이고요?

그러면 좀 같이 엮어서 답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획예산처가……

○**소위원장 박수영** 국가재정법은 다른 부처 법률이니까 다음에……

○**김영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가재정법과 같이 연계해서 조세부담, 그 뒤에 소득 계층별 조세부담…… 이것은 문진석 의원님하고 황운하 의원님 안이구나.

조세정책의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근거 이런 것은 좀 답아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조세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5년간의 계획을 낸 거라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 방법이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이것은 무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소득재분배를 보려면……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 얘기 한번 들어 보고 하시지요.

○**정태호 위원** 저는 정부가 이 점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정부도 업무보고에서 양극화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시장소득에서의 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재정이 투입되고 나서 보면 오히려 OECD국가에서도 하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소득재분배라는 원래 재정의 역할을 전혀 수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보유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투세, 물론 취소됐지만 이 이슈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엄청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쟁도 벌어질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논의가 됐던 상속·증여세 문제도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세 개혁 수준의 그런 주장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와 관련해서 재정의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정부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좀 연구해 보고 하자 이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를 제시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유상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문진석·황운하 의원안은 사실 조세정책의 결과로 인해서 소득재분배의 영향이라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세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조세정책 방향으로 시행된 결과의 효과를 얘기하라니까 그 안에 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김영진 의원안이 낸 부분이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각종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나면 또 재정이 들어가고의 결과는 결국 그 이후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단계 단계 결과적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이지 그것이 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계획을 세워서 5년간 분석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냐, 법인세는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면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향을 잡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활용되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의견이 상당 부분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 위원** 유상범 위원님 재경부를 많이 도와주시네요.

(웃음소리)

○**유상범 위원** 아니예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지금 입법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많고 이념성이 같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뒤섞어 버리면 나중에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실제 소유자를 단속하겠다고 해 놓고 법 규정은 완전히 잘못된 임직원 범위를 법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만들어 놓고 다시 거기에 예외를 두는 이런 식의 입법이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무부 출신 유상범 위원에 이어서 기재부 출신 박성훈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이 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이게 각국이 하고 있는 조세 분석 중에서 예를 들어 영국 IFS의 택스 베너핏(tax benefit) 이런 모델 같은 것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석을 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가장 문제 아닌가요?

기재부에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 통계로 이런 것을 뽑아 낼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이 부분은 김영환 위원님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국제청하고 해서 데이터를,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근로소득자들 연간 소득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를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따져서 이분들이 각 분위별로 얼마나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려 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은 국세 통계 업무에 없는 자료지만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제도를 들여다보는 목적과 다르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증세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세라는 게 결국 정치적 목적을 떠나서 합리성을 기반으로 공정하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세부담 귀착 효과가 정확히 분석이 될 수 있다면 찬성이지만 지금처럼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결국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도 이런 부분에 중요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세 통계에 없는 자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분석하고 만들어 내는 그 결과물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의 증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자산과 직접 소득과의 연결고리…… 여기 47페이지에서도 분석을 해 놓으셨지만 자산, 특히 자산의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라고 분석을 하셨고 따라서 소득계층별 전체 조세의 세부담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 있는 자료 분석이 곤란하다 이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뽑아 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소득세가 누진적이고 소비세는 역진적이다 이런 정도의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 내다 보면, 뽑아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그 과정에 있어서 바이어스(bias)가 들어가서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요. 많이 하셨으니까 딱 한 번만 더 하십시오.

○김영환 위원 아니, 무슨 정치적 프레임 얘기하십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국세 기본 통계를 가지고 조세지출한 내역들을 바탕으로 귀착 효과가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후의 과정은 박성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거고 사실은 기본 통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과 호주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귀착 효과 분석들을 통해서 향후 조세지출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야 될지. 왜냐하면 이 통계는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통계인데 누가 어떻게 계층 분위별로 혜택을 보고 있는지, 누가 더 손해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좀 말씀드리면, 조세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특히 소득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계획 안에도 일정 정도 목표나 계획은 담고 있어야 된다, 이 불평등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이제까지 재정경제부가 좀 신경을 안 썼던 내용들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OECD국가 중에 과연 재정정책이 됐건 조세정책이 됐건 정부지출에 따른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경로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계층별 소득 귀착 문제도 데이터를 잘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나 우나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까지 데이터로 가능하겠는가, 방향에 대한 얘기는 추상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중장기 조세운용계획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영환 위원님 늘 주장하신 것처럼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부터 좀 열심히 해보시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겠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가능할 때 법을 만들어야지 가능하지 않다고 정부가 얘기하는데 법부터 만들어 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런 좋은 방향의 분석이 나오고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는 보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이 논의는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후에 아예 안 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요, 아예 안 하는 것은 소위원회 계류고요. 보류하는 것은 다음에 준비가 되면 한 번 더 논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2페이지입니다.

고액채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고액채납에 대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은 고액·상습채납자의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여 국세징수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4년 고액·상습채납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이 6033명, 법인이 3633개 업체이고 총 채납액은 6.2조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이 중 10억 원 이상의 고액채납자는 776명으로 채납액은 거의 3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채납액의 48.1%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채납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 다만 다른 법률상 채권은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일반 국가채권 5년 등으로 설정되어 있고 현행법상 납세 독촉·압류 등을 통한 소멸시효 중단·정지 제도

가 있어 이를 통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연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대부분 시효 이 부분에 대한 제도의 효과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관리비용에서 늘어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효 만료로 인해서 현재 소멸되는 체납액은 전체 누계 체납액의 2% 미만으로 보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실상 국세청의 재산 추적조사나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재산을 적발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징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외해 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효라는 게 저희가 언제든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갖고 계속적으로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계속 연장할 거고요, 재산이 도저히 없으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소멸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른 법률과의 사례에서도 15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10년으로 하더라도 독촉을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행정비용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7페이지,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간 조정에 관한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58페이지,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등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거주자의 경정청구기한의 기산점을 현행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로 조정해서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의 종료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0페이지, 지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은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로 조정되면 종료일이 연장되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 거주자의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현행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에서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6월 1일로 조정할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나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3개월 정도 경정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6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경정청구기간 종료일이 약 3개월 정도 늦춰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 경정청구 시작일도 3개월 미뤄짐에 따라 조속한 권리확정 및 환급을 저해하는 불이익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처럼 이렇게 연말정산하면 3월 달에 실제로 납부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경정을 청구할 시간 5년이 작동이 되는데 이 법에 따르면 종소세처럼 6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경정청구를 해서 5년이 흘러가는 체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잘못 신고했구나’ 하고 빨리 환급받고 싶은 사람은 두세 달을 기다려야 되는 일이 물리적으로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반대로 과소납부했으니 더 내라고 하는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의 부과기간이 있는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또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과제척기간은 3월 11일부터 작동해서 5년간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권과 국세청의 부과제척기간이 같이 가서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만 미루게 되면 그 기간의 불일치도 있다는 점도 같이 고민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이것은 상임위 계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부정행위인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상향하는 최은석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서 발생한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의 경우 역외거래 부정행위와 같이 무신고가산세율을 60%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5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른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2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는 4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로서 역외거래인 경우는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또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워 이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증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가상자산의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 또는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경우 과세정보의 획득과 부정행위 적발이 역외거래와 같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높은 가산세 부담의 위험성이 납세자의 조세 탈루의 기대이익을 낮춤으로써 성실신고 유도 기능으로 개정안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5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고 있고

2027년부터 국가 과세 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탈세 방지 관리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계획이므로 추가 규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P2P 플랫폼, 암호화폐 지갑 등을 이용한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 등 위 제도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개정안과 같이 무신고가산세율을 인상할 경우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무신고 외에도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의 경우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안을 만약에 입법화한다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규정도 같은 취지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우선 해외거래소와 관련된 개인 간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금융 당국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점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자산이든지 국내 거래랑 역외거래를 차등화해서 벌금을, 가산세를 부여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한해서만 국내든 해외든 동일하게 60% 하는 것은 약간 법체계상으로 다르고 좀 과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지금 현재 역외거래는 60이잖아요, 60%. 그게 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역외 60 맞는데 이 법은 국내 거래라도 가상자산이면 60%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안도걸 위원 국내 거래소인 거예요, 개정안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런 취지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 취지 아닌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내외 다 포함해 가지고 P2P 개인 간 지갑 거래는 사실 적발하기 어려우니까 가산율을 높게 매겨서 사전에 억제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인지 국외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역외거래인데 예를 들어서 거래소를 통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통상 지갑, 월렛으로 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이 역외거래하고 여기서 추가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내 가상 운영하는 거래소 외를 통한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취지는 알겠는데 역외거래 그런 게 굉장히 포괄적인 거잖아요. 포괄적인 것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예를 있잖아요,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래를 또 추가를 해 놔단 말이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의미입니다.

○**안도걸 위원** 이게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타것이 되는 거래가 정확히 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수석전문위원 의견에도 불구하고 P2P 거래 실제로 잡아내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실행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대로 계류해 놓고 조금 더 상황 변화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계류하는 것으로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1페이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근거 신설 등에 관한 박성훈 의원 발의안입니다.

72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예정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시 현행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지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으로 규정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서류’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73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로 구축될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과 관련하여 총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19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서류의 범위가 확대되면 행정심판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만 조세심판원, 국세심사위 등 조세 분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개정의 실익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행정심판과 특별심판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별행정심판기관을 중앙행정심판과 통합하는 행정심판법 개정 논의 자체가 현재 보류된 상태인데 행정심판제도의 근본적인 통합 없이 정보통신망만 창구를 따로 만들어서 이원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서류 접수하는 기관하고 실제 심사 심판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상황이 되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접수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심판기관에 전달이 정확하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심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시간이 기산이 되게 만약 허용하면 시간이 오히려 흘러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권리구제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용의 부담도 생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성훈 의원님 발의 법안입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낸 발의 법안이기에 때문에, 저는 이게 앞과 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국민의 편의를 우선하고 행정의 효율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이미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성훈 위원 그런데 118개 기관 중에서 9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게 아닙니다. 90개에는 저희가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조세, 노동, 토지 분야가 현재 제외돼 있습니다. 아직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정원같이 국가안보나 이런 이유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90여 개가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저희가 법을 만들어야지 참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행정통합을 원스톱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절차고 또 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아마 정부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입장인니까 이거는 정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이소영 위원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도 박성훈 의원님 법안 취지가 국민 편이에 부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취지는 맞는데 정부의 준비 상황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했다가 준비되는 대로……

○박성훈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까지 오늘 오전에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안이라서 위원님 계실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6페이지 13번, 정기세무조사 선정 시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의 정기세무조사 제외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77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 중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적정한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8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81조의6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최근 4과세연도 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무조사의 예외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랑 80페이지의 장부 기록 등이 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예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납부확인제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81페이지 표의 상단입니다—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소규모 내국법인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 법인 역시 성실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 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일정 부분 담보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재정 여건과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3페이지,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는 개정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반면 보다 규모가 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오히려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85페이지 표를 보시면 1번에 간편장부대상자는 부동산임대업 7500만 원, 농림어업의 경우 5억 원 미만은 아예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서 부동산임대업계 경우에는 5억 원이고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상의 대상자는 개정안에 따라서 정기세무조사 대상 제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번과 3번 사이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르

라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하단 말씀드리면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정기세무조사는 그 취지와 기능에 차이가 있으므로 성실신고를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정기세무조사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참고로 세무사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따라서 성실하게 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에는 정기세무조사라는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고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센티브 기반의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요.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성실신고확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자기확인제도로서 외부 검증제도가 아니므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정기세무조사의 기능이나 성실신고확인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실신고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세무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항이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목적과 대상이 다른 사항입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의 대상은 매출액이 큰 사업자 등으로서 세무 리스크가 좀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 정기적인 세무조사 필요성도 함께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탈루가 적발이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경우를 보면 세무사 징계가 총 31건인데 성실신고와 관련해서 잘못된 게 26건으로,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세무사가 적발된 게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부분 전체를 다 통으로 면제하기에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기업별 규모에 따라 보면 중간에 블랭크가 생긴다는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수시조사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실신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제출하신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우선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기업들의 그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실신고를 한 경우에도 여전히 세금 탈루의 그런 위험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전체를 다 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이 제도를 도입을 하더라도 정기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85페이지에 1과 3 사이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하고 간편장부 대상자, 그러니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보다 좀 더 영세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라는 게 기업 활동에 상당한 큰 부담이거든요. 지금 1년에 성실신고납부확인을 받아도 한 30건 정도의 그러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뭔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 또 영세사업자들의 그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1과 3 사이에 있는 이 기업들도 뭔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세무조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를 해야지 1과 3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아예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감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1과 3 사이에 있는 이 기업도 뭔가 세무조사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 납세자와의 탈루율을 비교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기재부에.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국세청 사례들 있는데요.

○윤영석 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이렇게 했을 때 탈루율과 또 일반적인 탈루율을 비교해 가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기업들의 탈루율이 현저하게 낮으면 뭔가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강구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영석 위원 답변을 좀 듣고……

○소위원장 박수영 예, 답변 조금 이따가 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에서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거는 국세청에서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은……

○윤영석 위원 성실신고확인을 했을 때 탈루한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실신고를 안 했을 때 탈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해서 성실신고를 했을 때 탈루율이 현격하게 낮다면 충분히 세무조사의 그런 제외 대상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비교를 해서 가지고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자료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안 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조문을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세무사들이 이걸 도와 가지고 나중에 징계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성실신고확인 제도 자체의 존재가 논의가 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징계 수위를 올린다는지 해서 세무사들이 정말 걱정하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윤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따로 추가로 보고해 주시고.

일단 보류했다가 자료가 준비되면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7페이지입니다.

14번,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대상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이인선 의원안입니다.

88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외에 세무사에게도 납세자의 동의하에 사전통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 신고대리 세무사에게도 함께 통지하면 신고대리 세무사가 관련 신고서 등을 미리 점검·검토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회계장부 5년 치를 조사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다수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길 경우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한 모든 세무사를 파악한 후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할 건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적지 않은 행정력이 소요될 거라고 보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통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신속한 세무조사 대응 필요 등에 의해 사전에 세무조사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납세관리인 제도를 활용 가능합니다. 납세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세무조사 통지는 납세관리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중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세무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지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을 보고 현재 고용한 세무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세무사인지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다 동의를 받은 세무사에게 동시에 통보되도록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개인의 선택에, 혹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세무대리인이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 파악할 건지에 관련된 행정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법상 의무사항으로 통지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되었

는지 시작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은 본인한테만 주면 시작이 되는데 대리인까지 줬는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도 모호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납세자 본인이 관련된 세무사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 정부 측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납세, 모든 세무대리인한테 무조건 국가가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다른 오해 내지는 특정 직역 밀어주기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행정력의 낭비도 심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이 안건은 단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2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제공 의무화 및 국회 제출 강화입니다.

93페이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예외적으로 국회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현행 국정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더하여 개정안은 국정감사, 두 번째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세 번째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예외 규정에 국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는 국정조사위원회가 의결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의 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과세정보가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입법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둘째, 개정안에는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국회법에 따른 안건심사라는 목적의 제한이 있고 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절차적인 제한, 비공개회의에서의 제공이라는 제공 대상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는 현행법상 과세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국정조사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덜하다거나 특별하게 달리 취급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국회 입법,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공익적 필요와 개인 과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먼저 과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세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자발적인 신고·납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공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자발적인 신고·납부 제도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전반적인 취지에 애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조사에서는 들어왔었는데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나 조사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매년 정기국회 전에 30일간의 기간을 정해서 정책적 사항을 논의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허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계자료와 관련해서 충실하게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이미 인사청문회법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래서 5년간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근거가 이미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과세정보와 비밀 보호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는 취지를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일단 차관님과 실장님께 질문을 하지요.

유럽의 선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나라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알기로는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예외규정이 없다고 알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혹시 북유럽 3개국이나 덴마크나 네덜란드·벨기에 관련해서 과세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바 있으신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확인을 못……

○최기상 위원 이 과세정보라는 게 저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개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 다수가 과세정보를 위협한 부분을 최소화해서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개인 과세정보를 보호하는 게 대원칙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금 이 사회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약간 따져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법인세, 자영업자분들이 세금 내는 부분도 그렇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게 공개됐을 때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세정보에 따라서는 일부를 어떻게 가리고 일부를 어떻게 하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추상적인 단어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근거 없는 원리원

칙을 들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세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북유럽이나 유럽의 아주 특별한 나라들의 사례가 다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그로 인한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쯤 재정부에서 또 세제실에서는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상의 비밀유지의무는 96년에 저희들이 OECD 가입할 때 OECD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국회법상에 비밀유지의무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하면 국회에 대한 예외 확대는 그 당시에 OECD 가입할 때 그때하고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고 현재 OECD 모델조세조약이라고 있습니다. 제26조에 보면 납세자의 정보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인물 또는 기관에게만 공개 가능하도록 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기준이나 이런 걸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인사청문회에 5년간 제출한다고 했지요? 5년간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는 볼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5년으로 한 거는 조세채권이 5년이라서 5년으로 제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청문 시점에서 5년은 다 냈다 하더라도 그 전에 10년 동안 계속 안 내거나 체납하거나 한 일들이 쪽 있어 왔으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 하는 경우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런데 아마 그게 부과제척기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보통 5년 이니까 그래서 부과할 수가 없는데 공개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세청 입장은 그런 것이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5년은 열심히 냈더라도 지난 10년간 아주 안 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실장님, 혹시 이 조항으로 인해서 남용될 우려라든지 결국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정감사나 또는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 이렇게 확장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남용 우려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하신 대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과세정보가 아니고 어쨌든 통계를 가공해서 국회에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상당히 피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통계자료를 되게 정밀하고 조금 세밀하게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수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외의 자료는 다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항하고의 충돌 이건 검토가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증언감정법에서는 국가안보나 외교·안보·군사·통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는 국회가 요구했을 때 자료제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정보공개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증감법과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느 법을 우선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국정감·조사나 국회에서 안건 심사를 할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행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나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이나 국세기본법에 관한 경우 근거를 들어서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감법이 우선한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 여부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이 법에 우리가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개별법에 충돌을 해서 못 내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제출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개별법에서, 지금 국세기본법에서 만약 이 규정을 둔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과세정보는 이 법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위원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인사청문회를 해 보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자료를 안 내는 게 태반이거든요. 지난번에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할 때도 개인정보라고 그래 가지고 자료를 안 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은 경우들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여기 나호, 국회법에 따른 안건 심사는 너무 넓은 것 같은데 가는 국정감사 또 다의 인사청문회 이거는 그렇게 넓은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제가 한번 수석전문위원께 여쭙본 겁니다.

김영환 위원님 아까 발언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이 경우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까 이혜훈 후보자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면 아들, 자녀들 그다음에 부모님 관련된 과세정보 이런 거는 제한이 없잖아요, 여기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는 현재 의결만 하면 다……

○김영환 위원 그냥 의결하면 다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하는 본인 자신의 모든 과세정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동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이 제도의 취지가 조금 상이하지 않나 싶어요. 과세정보를 제공했다는 거는 본인의 납세와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예를 들어 국회법에 따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과세정보가 제공된다 이거는 과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납세의무자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형태로 오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서 가나 다와 상관없이 나에 대해서까지 확장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과세정보·납세정보 보호라는 취지나 비밀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용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저희가 짚어 주

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 자료제공의 취지나 본질과는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또 이런 자료가 2차 가공될 수도 있는 우려가 크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에 과세정보 제공 명령이 오면 제공합니까, 제공 안 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법상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관한 과세정보 요구 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개의 사적인 재판,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제공하는데 공적인 국회 의결인데 자료를 안 낸다는 거는 이거 두 개 균형이 좀 맞을까요? 저도 법원에서 보내면 거의 다 그냥 내거든요. 가끔은 변호사 중에 그걸 악용하려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서 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적발해서 처벌도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 있는 사건에도 법원에서 판단하면 주는데 국회에서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내 달라고 의결을 했는데 안 줄 수 있는 게 저는 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여기 회의장에 국세청의 담당자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같이 의견을 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 경우 혹시 해당 당사자, 그러니까 재판 당사자의 과세정보예요 아니면 대상 불문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타저타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과세정보에 한해서 그런 건지, 예를 들면 재판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대상 불문하고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래서 그게 제가 조금…… 해당 재판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판사가 불문하고 그 이외의 과세정보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질문도 실제 과세관청에 한번 물어보시면……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국세청 담당자 얘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송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간의 행정소송에서 국가와 개인 납세자 간의 다툼이 생길 때 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요. 민사끼리도 요청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거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그 납세자의 과세 근거라든지 왜 어떤 근거하에서 국세청에서 과세했는지 이런 거를 위해서 주는 거지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서 누구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기상 위원님이 북유럽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북유럽은 우리나라나 일반적인 서구권하고 문화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1700년도부터 자기 나라 국민들의 개인 소득·재산 정보는 공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한 500년 이상 된 북유럽 특유의 문화적인 소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글로벌하게 일반적인 원칙이나 원리로 설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이게 김영진 의원안을 보면 비공개회의에 제공하는 거거든요. 정부 측에서는 비공개회의에 주는 것도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개가 아니고 자료제출이 아니라 비공개회의에 낼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부 측 의견?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저희는 비공개회의에 제출이 됐더라도 이미 인지한 건을 나중에 국회의 다른 회의장에서 하신다면 면책특권이 작동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면책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비공개회의라도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논의의 기본 발상이 충분히 이견, 국회에서 계속 나왔던 누적된 문제 제기여서 이 법안이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정보공개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비판과 고민이 있어서 정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그 해법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는 관련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좌제를 금지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고 특히 인사청문회 본인 당사자 것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는 그게 어디까지 확대 가능하냐 이 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 비공개회의에서 했던 것인데 이걸 공개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내지는 사실상 회의에 참석하는 보좌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형사책임을 담보하면서 비밀유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다른 보조적 수단이 없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약간 대안적인 고민을 좀 더 해 보면 어떨까,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더 축적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우리가 대미특별법 할 때 비공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인지한 국회의원이든 보좌진이든 비밀유지의무가 있어서 누설 금지하도록 돼 있고 처벌 규정이 들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볼 방법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무 자르듯 이것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하기에는 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일단은 보류를 해 놓을 테니까 정부 측도 그렇고 의원 보좌진과 의원실에서도 조금 더 연구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6페이지, 16번입니다.

조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의 지급 한도 상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조세 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조세 탈루 제보자에게는 40억 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30억 원, 기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탈세 행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하고 지능화됨에 따라서 탈세 제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할 경우 전체 탈세 제보 신고 건수와 과세 활용 건수도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다만 실제 포상금 지급 수준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제한되고 다른 포상금 제도에 비해 지급 한도가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 조세 탈루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최대한도가 40억 원인데 여기까지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최대 30억 수준입니다.

다만 참고로 최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 상한과 관련해서 불공정거래는 30억 원, 회계부정은 10억 원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조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탈세 제보 포상금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1억 정도 되다가 지금 10억, 20억, 30억, 40억 여러 번에 걸쳐 계속 상향해 온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것은 평가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얼마까지 상향할지에 대해서 현재 금융위에서 나온 아예 한도를 없앤 사례도 있는 점이…… 필요가 하나 있고 또 이 조항에 있는 것처럼 조세 탈루 제보자도 있지만 세법상에 보면 또 다른 포상금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포상제도가 세법상에 존재하니 저희는 이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해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유상범 위원 이걸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정부 측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니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탈루 이런 건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해서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안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4페이지 열일곱 번째, 압류금지 재산 중 채납자의 재산의 개념 명확화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생계비계좌와 연계하여 국세징수 절차에서도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라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사집행법과 개별 법령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압류할 수 없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월간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신설하고 있고 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일정 금액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의 개념을 국세징수법에 반영할 경우 채납자는 자신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를 통해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동 개정법률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이 26년 2월 1일로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생계비계좌를 포함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처럼 시행 시기를 바꾸는 것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다음으로 심사자료 2권입니다.

첫 번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30년 말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최고 40%이며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연간 2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성장펀드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 펀드는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및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체토론의 요지입니다.

김태년 위원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가입이 소득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펀드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확대하지 않도록 펀드의 일정 비율을 소득분위별로 할당하는 방안이나 저소득층·청년 전용 초저리대출을 통해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시책의 일환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기여가 가능하고,

둘째, 국민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모 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첨단산업 육성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폭넓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세제 혜택의 총 소득요건이 정해지지 않아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즉 수직적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은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5페이지 상단의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예시는 총급여액 5000만 원인 자와 총급여액 1억 원인 자가 급여액의 10%를 동 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은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자는 세액감면 혜택이 30만 원인 데 비해 1억인 자는 96만 원으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두 번째는 동일하게 5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급여액 5000만 원인 자가 세제혜택은 30만 원인 반면 1억 원인 자는 48만 원으로 동일한 투자금액에도 불구하고 총급여가 많은 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이 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이에 대해 재경부는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직전 3개연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가입자는 제외하였고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인 2500만 원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금융소득과세 대상이 아닌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귀속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이 적용되는 인원은 전체 인원의 0.008%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 소득공제는 대다수의 고소득자가 수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여전히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히 재경부는 유사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이연주 의원안, 각주에 보시면 이 경우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최대 30%, 배당소득 분리과세 9%를 적용하는 유사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투자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감세 혜택이 귀착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는데 이러한 문제는 동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납입한도가 인당 2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점, 의무투자기간이 3년이라는 점 역시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ISA 평균 투자금액을 고려할 때 납입한도 인당 2억 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25년 12월 기준 ISA 1계좌당 평균 투자금액은 632만 원이고 누적 투자금액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 수는 전체의 0.7%에 불과합니다.

7페이지 상단입니다.

셋째, 가입자의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모,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예치 하는 등 과세특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1인당 2억 원의 납입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도 소득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ISA 가입 대상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의 나이 요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나이 요건 제한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닌 미성년자 등에게 증여 유인으로 작용하여 근로 없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 등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세제 혜택이 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은 채 모두 대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세제지원 대상의 구체성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세제지원의 목표가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액 제고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의 목표는 당해 펀드 투자 활성화의 정책적 필요성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 투자 대상, 주목적 투자 비율 등이 본 개정안의 경우는 구체화되지 않은 채 단순 펀드 조성액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 결론적으로 동 과세특례를 신규 도입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외에 소득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 요건을 규정하거나 소득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연령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세 번째 국민성장펀드 및 투자 대상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1 소득공제의 소득 요건 규정은 국민성장펀드와 같이 40%의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면 소득 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1-2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시 소득 요건이 없는 장기주식형 펀드 및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최대 20% 및 10%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의 연령 요건 규정을 보면 현행 ISA의 가입대상의 경우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는 점을 참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국민성장

펀드 요건 구체화에 대해서는 주목적 투자 대상을 산은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국민 참여형으로 조성하여서 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걸로 이해되고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소득형평성을 감안할 때 소득공제에 관련된 소득 요건을 따로 두자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펀드는 어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발된 여러 가지 그간의 펀드에도 동일하듯이 소득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도 서민의 저축 지원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두지만 이렇게 어떤 정책적 펀드를 활성화하는 차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두지 않는데 대신에 그 소득공제율을 두더라도 점감형으로, 처음에는 많이 주고 3000만 원 초과하면 그 40% 공제율을 떨어뜨려서 줌으로써 낮은 단계에서 많은 공제율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김태년 위원님께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랬을 때 서민들이 좀 더 참여형 국민펀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금융위하고 협의한 결과 금융위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번에 출시할 때 별도의 쿼터를 뒤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ISA 가입 대상자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민으로 보고 서민형 ISA 가입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춘 분들에게는 20%나 30%를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쿼터를 줘서 발매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율 하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로 서민 저축 형성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기주식형 펀드나 코스닥벤처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낮습니다. 이 경우에 장기주식형 펀드는 이자 배당을 전액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대신에 분리과세 외에 추가로 좀 더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소득공제율을 좀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공제를 함부로 두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희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배제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부분은 어떤 점에서는 저희가 합리적이라는 대안도 될 수 있는데 이 연령 요건을 추가하게 되면 실제 은행 금융창구에서 이 부분을 다 확인하는 과정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연령은 주민등록증으로 간단하게 되겠지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를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행정 부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펀드의 구체적인 요건을 구체화하자는 거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문구를 좀 더 다듬어 갈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차관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7페이지 넷째에 있는 대통령령 위임 부분, 포괄위임 관련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 조세법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런 판시를 하고 있지요. 심판 대상 조항이 아무런 기준 없이 조항들의 적용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국회가 보유한 입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전부 일임한 것이다, 따라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 기준은 법률에 일단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사 그렇더라도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대통령령에 어떤 조항들이 내용이 들어갈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투자 대상 부분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이고 또 위에 집합투자기구 부분도 특별하게 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혹여 다른 법률과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지적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목적 투자 대상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투자 대상을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거를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최기상 위원 집합투자기구 부분은 어때요, 괜찮아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이거는 국민성장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가 집합투자기구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말씀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어떤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목적에 동의한다고 해서 수단을 동의하는 건 아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세제감면 혜택의 구조가 다른 제도와 관련해 적절하냐, 지금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이 목적이 정당하기 때문에 수단도 다 정당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논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쭉 얘기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은 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 이 제도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득공제든 소득공제율이든 또는 그 세율이든 둘 중의 하나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둘 다 관철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연령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행정적 부담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관철이 안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전문위원이 비판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그 해법은 그냥 무시하고 가자 이런 답변

이어서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요건 구체화는 방금 최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서로 협의하신다니까 별도로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라는 콘셉트 자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잘 정리하신 것처럼 과거에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펀드들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런 걸로 볼 때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민간이 나서서 해야 되는 영역에 정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 우선이 되고 수익률보다 정책적 목표를 우선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또 민간에 대한 구축 효과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VC가 하든 PE가 하든 민간이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오히려 맞지 지금처럼 정책목표를 앞장서서 내세우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도덕적 해이밖에 없다는 게 저의 경험이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손실은 정책금융기관이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세금으로, 재정지원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를 만들에 있어서 특히나 세제 혜택을 아주 면밀하고 꼼꼼하게 따져 보지 않은 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형태는 반대를 합니다.

특히나 정부가 어떤 세제 혜택의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제도가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어떤 세제의 효과만을 가져다주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당초의 정책적 취지와는 다르게 과세 특례의 남용으로 호를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세제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짚어 보고 동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목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 번쯤 따져 본 후에 이 법안과 제도를 좀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이 펀드가 조성되게 되면 운용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운용은 경쟁을 통해서 운용사를 선정해서 시장에서 유능한 운용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예전 게 제대로 흥행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성공하지 못했지 않느냐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개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용 제약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 투자 외에 비 주목적 투자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룰을 좀 열어 준 게 있고요. 그리고 펀드가 너무 많이 자잘하게 구성된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시정해서 메가 프로젝트 같은 기회,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추가했구요.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은 것 같아서 5년 이상으로까지 충분히 두어서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제대로 된,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아예 이 대상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더 첨부하면 운용사를 지금 선정했는데요, 재정 모펀드에 대한 운용사는 한 군데 선정했고 국민참여 공모펀드 운용사는 세 군데를 3월에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펀드 운용사는 5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이 근거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거를 벌써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이거는 금융상품에 대한…… 아직 출시는 안 했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근거 법이 없는데 운용사를 지금 선정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근거 법도 없는데 그렇게 이 운용사를 선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상품은 출시는 안 하고……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출시 여부를 떠나서 근거 법령이 없는데 뭘 운용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저도 한마디할게요.

○**소위원장 박수영**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계속 빈발하던데…… 아니, 이렇게 운용사를 세 군데 선정하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이거는 모든 게 법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에요? 통과되고 나서 이루어질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겨우 첫 일독인데 이런 식으로 벌써 운용사를 선정하고 자회사 운용 펀드 선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법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민간 회사에서 만일 이런 식으로 입법도 되기 전에 펀드를 만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국가가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여러분, 차관, 민간 회사에서 이사회 의결도 하기 전에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투자하면 뭐가 돼요? 배임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일을……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해서 펀드 조성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민간 1.5조, 간접투자예 민간 5.5조, 인프라 투융자에 민간 8조예요. 민간 자본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일방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도 전에 먼저 그냥 정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안을 뭐 하러 논의합니까, 이렇게?

○**정태호 위원** 금융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유상범 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태호 위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부의 설명을 들어 봐야지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산업은행법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그런 관련 법률이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는 작년 12월에 출범한 것이고요.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30조 원인데 국민참여형은 6000억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 출시는 당연히 세법이 통과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사전 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상범 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만든 것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명확하게…… 운용사 세 곳 선정했다고 하는 것이 산업은행법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아닙니다. 그것은……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운영……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법을 통과해 주시면 6월 이후에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할 텐데 그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상품이 출시될 수는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펀드사를 선정하고 하는 절차라는 게……

우리가 뭐든 일을 하면 법을 만들고 그 법의 후속조치로 대통령령,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리 예비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한 게 아니라 이미 회사 선정, 운용사를 선정해 났어요. 아무 근거 없이 한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아닙니다. 실제로……

○유상범 위원 아니, 이 법에 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사전 절차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국민 자금 모집을 해서 운용할 자산운용사들은 아직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0개사를 선정할 것이고요. 조세법이 확정돼야 그 상품설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장님, 아까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모펀드 운용사 하나, 자펀드 운용사 3개를 선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가 선정됐는데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이고요. 재정을 투입해서, 설정된 펀드에 앞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선정해 놓은 것이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정을 했잖아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국민 자금 모집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3개 운용사 말씀하신 것도 상품 설계가 완성되면 국민들로부터 공모 판매를 할 운용사들을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미래에셋하고 삼성 또……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3개사……

○소위원장 박수영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태호 위원 다시 설명을 해 볼게요.

국민성장펀드 재원이, 산자부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만들어져 있지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예.

○정태호 위원 그게 들어오지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예.

○정태호 위원 그게 한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일부가 나와 가지고 국민참여형 펀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정부가 재정 투입할 게,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 통과될 때 그 예산이 배정됐지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예, 맞습니다. 1조 원 중에 1200억 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그걸 5년 동안 매년 예산 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예.

○정태호 위원 그걸 가지고 민간이 들어오면 합해져 가지고 참여형 펀드를 만드는 거

잖아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예,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미 예산은 통과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그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예, 맞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이 법은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오늘 논의하시는 것은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모집할 상품의 설계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아까 산업은행법 언급을 하셨는데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무슨 산업은행법에 의해서 이걸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처음 답변하실 때 산업은행법에 의해서 뭘 했다고, 펀드를 만들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산업은행법이 작년에 여야 합의로 발의돼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5년간에 걸쳐서 75조 원으로, 정부 보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이 펀드는 그 기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기금으로부터 75조 원을 5년간 확보하고요. 앞으로 5년간 기금 돈과 함께 민간 자금 75조를 모아서 총 5년간 150조 원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자금 75조, 절반은 예산이 확보됐고 민간펀드 75조를 확보할 것인데 이것은 아직 법이 통과 안 됐고 그런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뭐예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민간 자금 중의 대부분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모아와 되고 또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고요. 오늘 논의하시는 국민참여형 부분은 민간 자금 전체가 75조 원이라면 그중 4%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금융위 국장님이시지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예.

○**안도걸 위원** 이게 근거법이 있잖아요. 근거법은 두 가지지요. 산업은행에 기금 설치에 관한 법 여야 합의로 됐고. 또 하나는 저것 아니에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라 가지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이 펀드를 하는 거지요. 다만 이것은 이러한 공공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는 거지요. 통상의 펀드 형태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거기에 약간의 이런 특성을 담은 독특한 형태의 펀드인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요. 이게 왜 법이, 근거가 왜 없어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자본시장법 체계를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

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그 체계에 입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예, 맞습니다.

○안도결 위원 다만 거기에서 공공 쪽 기금을 형성해서 그쪽에 투자한다는 게 별도 법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 그런 거지요.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예. 하지만 국민성장펀드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도결 위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펀드는 설립·운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관님께 한번 여쭙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민성장펀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국가가 쓸데없이 지금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구축효과를 만드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아닙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 과감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모아서 제대로 투자해서 그걸 갖고 성과를 내자 이런 차원입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지금 데이터센터라든지 전력망이라든가 이것은 대규모 투자를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중국·일본 전부 다 이러한 미래 첨단산업 관련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는 마중물 투자를 해 줘야만 리스크가 떨어지고 해서 민간이 여기에 가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라든지 기업을 우리가 육성시키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분명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이 펀드가 특정한 저소득이나 저자산가 계층에 대해서 자산 형성을 위해 하는 펀드인가요, 목적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자산 형성보다는 좀 더 정책적 목적,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ISA라든지 이런 별도의 펀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별도의 장치가 있는 거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장기 투자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첨단산업 경쟁에 있어서 뒤지지 않고 그 산업을 선점할 것이라는 차원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줘야지 이것을 단순히 기존의 펀드라든지 자산 형성 계좌하고 비교를 해서 소득 계층이 어떻고, 그렇게 과세형평을 가지고 논할 펀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이 법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과세형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인가요, 차관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저희가 소득공제율을 주는데 소득공제 대상을 줄 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아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지 않도록 첫 번째 막았고요. 소득공제율을 주더라도 3000만 원까지 높여 주고 좀 더 여력 있는 사 람이 들어올 때는 공제율을 저희는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금융위랑 협의해서 별도의 티오를, 쿠퍼를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까지도, 저희가 실제 상품 을 발매할 때 그것까지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국민성장펀 드에 가입할 때 그런 취지를 보고 가입할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 세제 혜택을 보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제 혜택을 볼 때 똑같은 상품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할 때 ISA도 있고 국민성 장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세제 혜택이 높은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 입할 겁니다. 지금 만들어진 이 국민성장펀드가 그런 측면에서 소득계층 간의 과세 불공 평성을 가장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고요.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결국 고소득층에 세제 혜택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제실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봐 달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박성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 얘기를 해 주셔서 가지고.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셔도 됩니다. 발언을 꼭 참고 계시네요, 오늘 은.

○김영환 위원 옆에 계시잖아요, 발의하신 분이.

(웃음소리)

○정태호 위원 안도걸 위원님이 발의하신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 맞아요.

○박성훈 위원 저도 안도걸 위원님 정말 존경하고 또 기재부에서 과장님으로 같이 일 했던 분이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취지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자료에도 나오는데 2021년도인가요, 뉴딜펀드를 만들었 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목표액이 3000억인가 됐을 텐데 실제로는 한 1800억밖에 모이 지를 못했지요.

제일 큰 근본적인 원인은 제대로 된 상품을, 그러니까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가입 자체가 그때 되게 까다롭게 설계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형 펀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들이 고려돼서 가 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려가 됐는데 아까 차관님 설명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들은 제외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장치를 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급한 게 뭐냐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AI 3대 강국과 함께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더 늘려 나가야 되는데, 한 3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금융위에서 설명했듯이 작년에 첨단산업전략기금인가요 그걸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75조인데 그중에서 일부가 민간, 국민으로…… 그러니까 계정으로 치면 다른 계정으로 와서 새로운 75조를 만들어 내는 건데 그중의 일부가 지금 국민참여형 펀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급성과 또 기존 뉴딜펀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지금 법이 나온 건데 아까 그런 소득불평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통과시키는 데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1인당 2억 원 납입한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컨대 가족이 우회적으로 아들, 와이프 이렇게 하면 8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저소득층입니까? 1인당 2억, 가족당 8억,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른 정책적 펀드도 한도를 일단 2억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까 연령을 확인하는 부분은 행정 부담이 좀 있지만 말씀 주시면 19세 이상 또는 15세나 근로소득자로 제한을 거는 것도 저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중간에 답변이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답도 지금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또 운용사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합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회한 상태에서 보고를 더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다시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회 상태에서 와서 한번 상세히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안건 넘어갑시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그래서 과세특례를 남용할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2억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제실에서 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의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페이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하는 안입니다.

16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 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려는 것입니다.

BDC 개요를 말씀드리면 16페이지 하단 주요 내용은 BDC는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되 거래소 상장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하면서 금전차입과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BDC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활성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세제 조치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세후 투자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투자 성과의 공유, 재투자를 촉진하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벤처·혁신기업 등의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키고 이들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을 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동 조세특례는 2028년까지의 한시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으로 벤처투자의 회수 기간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펀드의 주 투자 대상은 비상장기업, 코스닥 시총 2000억 이하,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조합 등으로 이들은 신기술에 대한 R&D라든가 설비 확충 등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로 일반적으로 초기 배당 여력이 없고 기업공개 혹은 M&A, 제삼자 매각 등을 통한 자본 차익 실현을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입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평균 비상장기업들의 IPO 소요 기간은 14.9년이고 벤처펀드의 평균 투자금 회수 기간은 적게는 6.1년에서 많게는 7.8년이 소요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28년 말까지는 초기 기업성장펀드의 분배금은 채권 등 10%의 안전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에 국한되어 많지 않고 따라서 개정안의 한시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 둘째, 일반투자자가 선택 가능한 ISA 등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아 투자 유인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ISA는 200만 원, 농어민·저소득층의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9% 분리과세를 부여하고 있고 일반투자자가 한정적 재원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도는 높으나 세제 혜택이 적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유인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BDC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은 저희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 중에 한시성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는 이 BDC 제도 자체가 3년간만 전속되고 더 이상 안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회수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는 세제 혜택은 3년간 주고 일몰을,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해보고 필요하면 계속 더 줄 수 있다는 차원이지 이거를 3년 내에 끝내기 때문에 회수 기간이 짧아서 이 제도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또 검토해서 추가로 더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보통 들어올 때 3년을 둔다는 그런 차원

에서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제 혜택이 적지 않느냐 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아까랑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BDC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벤처투자나 코스닥벤처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품의 유연성, 제도의 유연성이 훨씬 더 큰 BDC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신주 투자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지분 투자 외에도 일정 부분 대출할 수 있게끔 해 놔고 그리고 바로 환금할 수 있게끔…… 이게 받은 다음에 거래소에서 바로 되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환금성이 매우 좋은 점을 감안할 때 수익성 측면에서 이거 외에 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줄 필요성까지는 작다라고 저희는 봐서 이렇게 분리과세 혜택만 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게 어떤 정책목표에 따라서 하는 일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 대상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 코스닥의 시총 2000억 이하, 코넥스 상장기업, 벤처조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위험성이 큰 투자 대상이거든요. 반면에 위험성은 큰 대신에 생각해 보세요. 비상장 벤처회사에 투자한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선택되기 전에 그 가능성을 평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17페이지의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취지다, 이것이 맞는 방향인가? 아직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선택되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투자를 이 분야에 있어서 늘리는 거, 기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

그리고 고위험인 반면에 벤처투자는, 벤처기업은 배당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는 신생 기업이니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상품에 투자하는 국민들은 이 3년의 한시 기간 동안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이 실제로 생기면 투자 대상이 굉장히 고위험 대상이라고 하는 것과 수익은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대상이라는 점을 아는 투자 전문가들은 이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요. 이 구조를, 이 위험성이나 적절성, 안전성, 수익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홍보에 따라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적절한 것이냐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지금 여기에서 주는 유일한 혜택이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건데 ISA가 1년에 2000만 원씩 총 5년 누적, 5년 이상 났을 때 한도 1억으로 200만 원까지는 완전 공제 그다음에 9% 분리과세고요. IRP가 1년에 900만 원까지 세금 조세 이연이 되면서 나중에 5%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배당도 별로 나오지 않는 대상들, 특히 코스닥의 시총 2000억 원 이하의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굉장히 고위험 대상 투자 기업들인데 이런 곳들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건대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ISA를 포기하고 낮은 조세 이연, 저율 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IRP를 포기하고 여기로 들어오겠나. 그래서 이게 효과성도 의문이고 설사 홍보가 잘 먹혀서 여기에 돈이 많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한테 진짜 이익이 되는 방향이냐, 적절한 방향이

나 이런 게 제가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이 BDC 제도 자체가 금융위에서 도입된 법안이니까 금융위 관계자가 같이 나와 있다는 점을, 그래서 추가로 설명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BDC가 정무위에서 통과됐을 때 그간의 벤처 투자는 소규모 사모펀드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장도 있지만 코스닥 상장기업 등 중견 규모 이상의 법인을 주 대상으로 투자했고 이거를 풀링(pooling)을 하기 때문에 배당수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 대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자소득까지 같이 겸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상품성 있는 상품으로 보고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세제 혜택은 분리과세 수준만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금융위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금융위 나와서 설명해 보시지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BDC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소속·직위·성명……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최치연 과장이라고 합니다. 국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이미 차관이 말씀드렸듯이 BDC는 그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이나 아니면 코넥스 상장기업들에 대해서 민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아예 막혔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도 이런 벤처·혁신으로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된 제도고 말씀하신 위험성 관련해서는 투자 대상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지만 30%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또 국공채나 현금 등 안전자산으로 10% 이상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코스닥 상장기업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지요? 개별 투자도 할 수 있고 ETF 상품도 출시되어 있고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지 않나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그 부분도 있는데 비상장기업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런 혜택이 없이는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테니까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그런 부분이 좀 더 혜택이, 그런 부분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요.

이소영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소영 위원** 일단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지금 연달은 질문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실제 펀드를 모으고 하는 것의 포인트는 수익률이지 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감면으로 인해서 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수익률이 높으면 오지 말라 해도 모인다. 서학개미·동학개미 논쟁도 그런 거거든요. 서학개미·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가 더 많은 이유는 그게 수익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투자 대상에 풀링하는 기업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면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이 모이지요. 기회만 있으면 투자하게 돼 있는 거니까 세제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건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 혁신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한 사례가 있으면 저는 많이 모일 거라고 봅니다, 그걸 하는 펀드매니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세제 혜택으로 모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실제 지속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이것보다는 더 많이 세제 혜택을 줘야 되고 또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되고 세제 혜택 주는 생각만 하지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하고 실제 혁신기업이 상장해서 어떤 큰 모형을 만들 생각은, 그런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의 구조가 좀 한계적이다, 이런 식의 담론이면 계속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저는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저희가 미국 BDC나 영국 VCT에서 도입해서, 벤처모험자본에 개인들이 투자해서, 개인들의 자금을 모아서 성공한 사례들을 벤치마크해서 BDC를 도입했는데 제도 도입 초기 시점에 세제지원을 통해서 좀 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트랙 레코드도 차분히 쌓아 가지고 이런 세제 혜택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기반을 지금 조성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이 제도는 처음에 누가 설계한 겁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BDC 제도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제지원 말씀입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BDC 제도.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걸 도입하자고 이렇게 설계를 해온 거예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BDC는 2018년에 정부에서 발의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다가 22대 국회 때 여야에서 지적하신 것 다 반영해 가지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BDC를 만들 수 있게 한 법은 정무위에서 통과했고 우리 국회를 통과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는 금융위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재부에서 한 거예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세부 사항은 저희 금융위에서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금융위에서?

이소영 위원님, 아까 추가로 하시려고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 손든 분들도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과장님,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조금 전에 논의했던 국민성장펀드하고 지

금 이 BDC 2개를 놓고 볼 때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할 것 같습니까?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BDC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거를 고민해 가면서 내가 정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싶은 그 열망 하나로 이렇게 투자를 하려면 수익률이 높거나 아니면 확실한 세제 혜택을 더 주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IPO에 걸리는 기간 등을 따져 볼 때 최소 한 십사오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맞는 제도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도 설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성장펀드하고 한번 비교해 보더라도 저 같아도 국민성장펀드에 돈을 넣지 BDC에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공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엉뚱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할 게 아니라 다시 재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벤처 투자에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지 지금과 같은 경우는 결국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법을 만들고 또 이게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뭘 보장을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금융의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국민 자산 증식 측면에서 보더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나야 세제 혜택도 있지 수익이 안 나는데 무슨 세제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날 구조가 아니라는 것, 굉장히 위험한 코넥스 비상장기업 이런 쪽에 지금 억지로 투자시키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문제가 많은데.

손 든 위원들이 여러 분 계신데 발의하신 안도결 위원님 손 드셨고 또 정태호 간사님 손 드셨습니다.

안도결 위원님.

○**안도결 위원** BDC 이거에 대해서 금융위 과장님, 이게 수익률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억지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지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안도결 위원** 여기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는 벤처기업인데 약간의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는 벤처캐피털만 들어가잖아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예, 맞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기관투자자나 아니면 전문투자자들만 이 성과를 향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기회를 열어 주자라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예, 맞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출발점 자체가…… 이게 별 수익률이 없는 걸 억지로 수익률을 맞춰 주는 분야다 그건 아니지요?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예.

○**안도결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나 금융위원회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이 BDC가 도입되는 배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 단계에서의 정부의 지원 시스템은 대단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스케일업 단계에 간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또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기업들을 키워 주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BDC가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성장 가능성 아니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자본시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단을 도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 도입의 취지가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이 되지.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 최치연 제가 설명에서 누락을 했는데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위해서 억지로 펀드를 만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해서 투자자가 가져가는 수익의 구조라는 것은 기존의 일반 벤처나 스타트업 단계에 투자하는 개념의 펀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게 공모 코스닥벤처펀드가 있는데요 그 수익률 현황이 있습니다. 25년에 43%였고요 그다음에 18개 공모 코스닥벤처펀드가 있는데 전체가 다 플러스 수익률이고 그중에 14개 펀드가 수익률이 50%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면 이 수익률이 절대 낮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민간이 잘하고 있네요, 지금? 민간이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굳이 이렇게 끼어들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모니까요 투자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기 힘들니까 BDC를 통해서 공모로 하게 되면 이런 수익률을 일반 국민들도 같이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정태호 위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TPU를 만드는 리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애네들은 어떤 거냐 하면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내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보통 국내에서는 몇백억 정도 수준이라…… 그런데 애네들은 한 1000억, 2000억의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투자를 해 줄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외국 글로벌 펀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애국심이 작동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런 큰 규모의 투자를 해 줄 만한 펀드들이 필요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BDC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국내의 현실을 잘 반영한 이 제도의 도입이 이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구조라는 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펀드하고 비교, 병렬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의 차별

성을, 그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헛갈리는 거지.

○소위원장 박수영 통상 이런 설명은 정부 측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 두 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게 위원님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듯한 설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해서 통과시키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보류를 할 테니까 정부 측에서 더 연구하고 더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아까 제기된 의문들의 답변을 만들어 오도록 하십시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3페이지 농특세 부분은 앞부분에 국민성장펀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거는 거기의 서택스(surtax)에 해당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박수영 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5페이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을 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공제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의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250만 원의 기본공제 적용 후 2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입고 후 26년에 매도 및 원화로 환전하고 RIA 계좌 내에서 1년간 운용하는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50%에서 100%까지) 공제를 해 주는 개정안입니다. 다만 RIA 외 일반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공제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은 해외 주식 보유 개인투자자가 26년 중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을 매입하고 보유 해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환율변동위험회피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에 대한 세후 투자수익률을 상향함으로써 해외 주식에 투자된 달러 자산의 매각을 유도하여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증가시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RIA 계좌를 통한 국외상장주식 매도 자금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해외 주식 매각 유도를 통한 외환 공급 확대는 외환 수급 불균형을 안정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고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율은 양국의 구매력, 통화량 증가율, 금리 격차, 증시 기대수익률 격차 등 복합적 거시경

제 지표에 근본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RIA 관련 개인투자자 우회거래 및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출시 지연에 따라 당초 의도한 외환 유입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RIA의 경우 가측간 증여, 먼저 해외 주식을 판매하고 매도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나 해외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 매입 등 우회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목표했던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며,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의 경우 4월 초 출시를 목표로 상품 개발 및 전산을 구축 중이나 통상적인 상품 개발 절차나 시한을, 소요기일을 고려할 때 목표 시점 출시 여부가 불확실하며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셋째,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환해지 파생상품 매입을 통한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 내 개인투자자의 환율 전망에 따라 그 효과는 가변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선물환 매도상품 매입 유인이 감소하여 정책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법률에 비과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해외 주식 보유가액을 투자액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법률 유보 원칙에 맞다고 보고,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동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비과세 요건의 본질적 부분을 포괄 위임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명시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간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어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국민연금 같은 메이저 플레이어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저희 정부랑 국민연금과 함께 뉴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해외자산을 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WGBI를 편입하는 거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MSCI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외환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해외 파트뿐만 아니고 국내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요인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상법 개정들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점을, 같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 도입했을 때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또 나가면 어떡하냐는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수정안을, 이 법안을 같이 만들면서 해외로 나간 부분은 차감하겠다는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나갈 때 본인의 이름이 아니거나 해외계좌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생길 텐데 저희들이 이걸 다 사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이…… 그걸 다 단속해서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한 가지, 해외계좌를 통해서 한다면 해외계좌로 간 거는 앞번에 저희가 논의했듯이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훗날 적발되면 오히려 더 강한 벌을 받게 된다는 이런 제도로써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시가 자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하고 증권사들하고 굉장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오늘 소위를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에 저희는 출시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소위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홀드는 될 텐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나중에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저희는 이거를 빨리 출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외환시장에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이거를 통과시킬 때 부대의견으로 해서 재경위에서는 이거를 좀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법사위에 가서 또 논의할 때 법사위 통과되기 전에 발매되는 상황에 대한 대화를, 설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부대의견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시장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는 이유는 환율 전망에 따라 다르지만 그동안 환율이 원래 한 방향으로 쏠려 있었다면 이게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최근 환율이 굉장히 큰폭으로 진동을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보는 환율에 대한 기대심리는 많이 교정되어서 일방향보다는 흩어져 있고 그렇다면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같은 시기를 보신다면, 지금 중동시장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오는 것이 나중에 환율이 안정될 때보다 오히려 더 유리하다, 지금 들어오는 게 오히려 낫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이밍상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이 주신 해외 주식 보유가액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 계획이 작년 12월 24일에 처음 발표됐고 오늘이 3월 16일인데 애초에 정부 계획에서는 3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80%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기간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논의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게 최소한 두 달은 쥐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처음 100% 기간을 5월까지 그리고 그다음 80%는 6월, 7월 두 달 그리고 나머지는 50%라는 기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처음에 이 계획 발표됐을 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이 RIA라고 하는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고 또 다른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사면 그거는 환율상의 이점이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답이 국외 상장, 그러니까 다른 일반 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사면 그만큼은 차감을 하겠다 그 스킴을 넣으신 건데 이게 실제 기술적으로 작동할 거냐 하는 거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다른 일반 계좌까지 다 합산돼서 고려될 수 있는지를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운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내게 됐을 때 본인이 해외에 나간 거를 다 관리를 해서 그거를 차감 항목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계산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RIA 계좌를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같이 전산상으로 도와줘서 납세자의 편의를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모든 증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5개의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 세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자동으로 리포트가 되나요? 확인할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렇지요. 해외 주식 투자하는 그 정보가 국세청에도 다 오게 돼 있습니다. 해외 주식 사고팔고 하는 정보를 올해부터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증권사에서도 이것을 취합해서 납세자에게 얼마나 나가는가를 정보로 해서 차감해서 하는 걸 도와주는 것을 저희가 전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금융세제과장 박은영 담당 과장입니다.

작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의 정보를 국세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 여하튼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환해지 5% 소득공제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것 충분하냐, 이왕에 지원을 해 줄 바에는…… 이게 넉넉한 수준이냐라는 걸 한번 좀 짚어 보고 싶네요.

지금 선물환 매도액에 소득공제 5%지요. 근데 거기에 양도세율이 또 붙잖아요. 그러면 이로 보는 혜택은 매도액의 한 1% 정도에 불과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수수료는 통상 매도액의 한 2% 정도 되는 게 시장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수료를 2% 내고 거기서 또 얻는 건 1%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따지면 크게 유인은 지금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바에는 공제율을 조금 더 높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까지 드네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들은 처음에 환해지 비용을 다 대 줄까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국가의 재정으로 환해지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다 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절반 정도 규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주느냐 부분은 얼마나 세제지원으로 들어갈 거냐의 부분의 판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절반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해도 효과는 좀 있을 거다? 그래서 환해지를 많이 들 거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최근에 환율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환해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쪽의 상품이 출시가 되면 가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원래 개인이 환해지를 하려면 대규모 물량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미리 다 한 다음에 개개인이 자기 투자분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묶을 열어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볼 때는 환율이 이렇게 급변동했기 때문에 아마 해 볼 만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유인책이 분명히 된다 이거지요, 이 정도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결국은 세금만 떨어뜨리고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계속 저는 정부가 만든 제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만 지적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장기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서학개미들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고 했을 때 반응을 지켜보게 되면 이런 제도 만들기 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국내 주식시장을 매력 있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우선이 돼서 국내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서학개미들이 일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단기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지속가능하지 않고 영속적이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에 투자할지 해외시장에 투자할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유에 달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국내시장만 투자해 온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 이런 제도 설계가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제가 해외 사례도 한번 찾아봤어요. 해외에 이런 유사한 제

도를 만든 국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없어요.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 미국이 도입했던 홈랜드 인베스트먼트 액트(Homeland Investment Act)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제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조차도 효과가 없었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심지어 서학개미를 위해서 일회성과 같은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아이디어 차원으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도 그리고 매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규제 완화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 투자하게끔 만드는 게 원칙이지 지금처럼 어떤 우회적인 통로로 그리고 일시적인 조치로 환율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저는 선후가 바뀐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잘 지적을 했지만 특례 기한 종료 후에 재차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출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면서 법률에다가 비과세 요건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부로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할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드시피 이게 이거로 다는 아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1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그사이에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까지 다 해서 많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후 관계가 아니고 그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조금씩은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당장 급박한 외환시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증권사 창구에서 태핑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고 빨리 상품이 출시되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는 그걸 보면서 이것 하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참고로 제가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물어봤더니 서학개미들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대부분 코미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들이 볼 때는 제법 되는 숫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이런 조세지출 관련된 제도를 내실 때는 늘 세수감 이걸 내시고 제도를 반대하실 때도 세수감이 너무 커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제도 도입했을 때 세수감은 지금 양도세 면제 100%, 80%, 50%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세수감은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자료에 그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저희나 예정처가 이걸 추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게 수

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50이 되는지 20이 되는지에 따라서 세수 효과가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언제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계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추계를 전혀 안 하고 지금 이 제도 도입해 달라고 국회에 오신 건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하면 추계가 가능한데……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국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어떤 가정을 넣고 추계를 하는 거지 그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트렌드로 갈 거라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제도를 해 달라고 하셨고 의원님들이 내신 많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때는 또 세수감이 너무 커서 못 한다고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내는 안에는 세수 추계도 없이 세수감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제도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이게 가정을 넣으면 계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에 해외로 나간 해외 주식 보유량을 한 1700억 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3% 정도가 우리 RIA 계좌를 통해서 들어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미국에서 한 20%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환율을 가정했을 때 보면 한 3000억 원 정도가 세수감이 생길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감을 한 만큼 환율에는, 환율이 급하니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제도라는 게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1년짜리 깜빡 효과만 노리고 계신데 만약에 1년 뒤에 다시 왕창 또 나가게 되면 환율이 또 위험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1년만 적용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들어와서 1년 동안 적용받고 혜택을 받고 양도세 절감하고 1년 뒤에 또다시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기껏 안정되어 가던 환율이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외환시장을 확인, 특히 제일 중요한 국민연금과의 대화라든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민연금, 큰손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서학개미 아니었습니까? 외환시장의 불안은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국민연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거는 월별로 다른데요. 어떤 월에는 개인의 해외 진출이 좀 많았고 어떤 때는 국민연금이 또 많았고 그래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한 일정 부분 포션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 부분에서 좀 큰 변화가 있다면 시장 트렌드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오기형 위원 하여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수치는 딱 2개, 유가하고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수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박성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많은 문제의식에 대한 비판들은 거의 상당 부분

위원님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방 안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환율에 접근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심리 때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일단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법 제도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보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고 현물환 시장에서는 초과수요 그다음에 환헤지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급 초과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환율이 계속 오르냐에 대한 것 때문에 심리적인 거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제도적 장치를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풀고 별도로 중장기적으로는 뉴프레임워크라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구조 자체를 변경함으로써 환율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정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무튼 처음에 이 발상 자체에 대해서 미리 발표가 돼 버려 가지고 저희가 계획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이 메시지가 교란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일단 한 것이니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데는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효과가 명확히 있을 것인가 문제는 두고두고 비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게 한 두 가지가 있던데, 그러니까 우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고 최대한 집행 과정에서 축소하겠다고, 그 이야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지요?

두 번째는 환헤지 관련해서 비과세 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하는 것은 수용하겠다고 하신 거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음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논의하고 그 선례를 쌓고…… 그런데 이것은 선택지가 참 곤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근 들어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국회하고는 전혀 상의도 안 하고 뒤에 제도 들고 와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읍소하는. 이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 또는 정국의 운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협의하고 의논하고 법이 통과되고 그때 발표하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미리 해서 다 확정된 것처럼 해 놓고 국회에 와서는 정태호 간사님 입장 곤란하게 이것 통과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읍소하게 만드는 이 방식에 대해서 기재부가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진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것의 발표를 통해서라도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한 절박한 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환율 문제가 급박하니까 이런 어려운 방법이라도 찾아낸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진짜 여전히 조세지출만 늘고 효과는 깜짝 효과 이외에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우회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국세청에서도 받는다 고 했지만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유학비 이런 것으로 보내 줘 놓

고 이것으로 투자하면 국세청에 투자금으로 신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계좌로 투자하면?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 것들인데, 상당히 무리하게 깜짝 효과만 노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시장이 워낙 어려워서 이런 교육지책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도 정회 시간에 기재부차관님하고 정태호 간사님하고 저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하나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5페이지,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2026년도에 한해 종전 95%에서 100%로 상향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익금불산입 대상은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과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이고 외국 자회사 요건은 지분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불산입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95%에서 26년에 한해 100%로 상향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취지는 첫째, 익금불산입률이 상향될 경우 법인세 부담 감소로 기업이 종전 해외에 유보된 소득을 국내에 추가적으로 배당할 경제적 유인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 둘째, 해외 자회사 배당의 국내 환류가 증가될 경우 배당소득이 증가하고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외화 공급 증가로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수취배당액 중 비용으로 이미 처리된 금액에 대해 중복된 세제지원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당시 익금불산입률을 95%로 설정한 것은 수취배당액 중 5% 상당액을 국외원천배당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이미 손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할 경우 기존에 비용처리되어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이중적인 세제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출자자금 차입이자는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여 익금불산입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차입이자 외에도 국외 출자 시 환율변동위험회피를 위한 환헤지 비용, 외화차입 수수료, 그 밖에 외국 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발생에 상응하는 각종 비용의 경우 손금 산입으로 인한 세제상 이익에 더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00% 적용에 따라서 중복 세제지원의 소지가 남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입과 관련된 부분을 나중에 95%를 할 때 그런 차이는 감안을 했는데 100%로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만들 때 차입이자 부분은 차감하도록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비용, 환해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수수료 등은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차입이자 비용이 가장 큰 포션일 거고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제가 알기에는 오히려 행정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큰 차입이자가 가장 큰 논의 과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감하는 항목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 자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나 구조의 변화 이런 것까지는, 이게 1년간 한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안 하고 이미 발생한 배당이익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95% 할 때 비용 다 감안한 건데 이중으로 세제지원한다는 지적이 제일 뼈아픈 지적인 것 같은데 차입이자가 전체 얼마나 차지합니까? 한 50%를 차지하나요? 차입이자 이외에 다른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데, 차입이자만……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지금 개별 기업별로 자기 자본으로 출자한 건지 차입금으로 출자한 건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차입이자 부분을 반영한 것은 현재 내국법인 간 배당에 있어서도 내국법인이 출자 지분에 따라서 100%에서 50% 이렇게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자회사에 출자한, 차입이자로 자회사를 만든 경우에는 그 차입이자만큼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규정을 100% 익금불산입 만들면서 그 규정과 유사하게 차입이자만을 반영하도록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당초에 95% 할 때는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나머지 5%가 비용을 커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100% 다 해 줘 가지고 이중으로 세제지원을 받도록 만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기재부 처음에 95% 만들 때는 동의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위원님, 지금 현재 국가 간 이중과세 조정에 있어 가지고 OECD 회원국 중심으로 보면 약 34개국은 100% 익금불산입을 해 주고 있고 한 4개국, 5개국 정도가 95%, 한 나라만 97%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업별로 자회사 관련된 비용이 5%다라는 정당성은 없지만 그 당시에 5%를 익금산입하게 한 이유는 다른 나라 입법례를 참고해서 5%를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게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회사에서 손금 반영

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100%로 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계상된다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세제실에서 95%로 설정한 것 아니었나요?

○**재정경제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그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차입이자라고 봐 가지고 차입한 돈으로 자회사 설립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 이자를 현재도 내국법인이 내국에 자회사를 설정할 적에는 비용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 해 주는 대신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대부분의 비용을 차지하는 이자비용으로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런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 없이, 당초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왜 100%가 아니라 95%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100%로 바뀌면서 해외에서 100% 하는 나라가 있으니 우리도 거기를 따라서 바꾸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소위 때나 그전에 95% 할 때 왜 100%를 하지 않고 95%로 했느냐 할 때 차입이자 등을 감안해서 그 5%를 남겨 놓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100%로 갔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명확하게 차입이자는 실비가 있으면 무조건 빼자. 예전에는 차입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차입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 5% 아예 통으로 공제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100으로 가면서, 그러면 실제로 차입이자 문제는 확실하게 있는 건에서 무조건 차감을 하자라고 공제항목을 넣어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하지만 100%로 가는 거에 대한 애로, 하여튼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아니고 이 95%를 원복하자는 법안이 그 당시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95%를 주장하면서 나머지, 그래도 외환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 이것을 유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100%보다는 95%가 좀 더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 외환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희가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거라도 하면 이것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실제 차입한 게 있으면 그것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꾼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말한 것과 바뀐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게 외환시장 안정화 효과는 어느 정도 있길래 이중으로 세계 혜택을 주면서까지 도입해야 됩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장님, 이중으로 세계 혜택을 안 주려고 차감 항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중은 없다라는 말씀을……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차입이자는 뺐지만 나머지 비용들은 또 있잖아요. 5% 입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일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데이터로 보면 해외 유보소득이 저희가 5년간 쫓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71억 불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중에 일정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차관님, 이 익금불산입률 100% 상향하게 될 경우에 지금 예측하시는 그 효과 이런 부분들은 누가 산출하신 거예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게 95에서 100이 되면 5%가 올라가는데요. 법인세율이 20%라고 생각하면 1%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자금조달하는데 국내에서 대출을 할지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끌어올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1%는 대출금리의 1%에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95에서 100으로 가고 아까 얘기했던 71억 불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중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이것 한시적 조치인 거지요?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1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최근에 기재부에서 재경부로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업무하는 방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입장이 1년 만에 확실히 바뀌고 말이지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님 아까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1년 만에 막 입장이 바뀌는 것을 들고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는 재경부의 모습을 보면서 박성훈 위원이나 저나 한때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참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46페이지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 전액 수입배당금액 수령 시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47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실질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 부담세액이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른 최고세율의 70%를 적용한 금액 이하가 해당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보시면 현행법은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의 적용 제외로 첫 번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간주배당금액 및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와 둘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이 출자를 통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저세율국가에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특정외국법인의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로 환류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증가시키고 해외 유보소득이 국내로 환류될 경우 외환시장에 외환공급이 증가되어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제도는 소재지국 저율과세된 소득에 대해 우리 과세 당국이 해당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일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인데 원천지국에서 저율과세된 소득에 대해 국내 배당 시에도 비과세할 경우 과세 공백 발생 가능성 등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 촉진 및 환율 안정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과세 공백 및 조세회피의 우려 등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한시적인 도입 운용 후 효과를 분석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회하기 전에 했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수입금에 대한 익금불산입하고 동일한 취지로 저희는 이것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똑같이 1년 한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도 이 제도가 지금의 외환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운용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저세율국의 자회사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도의 남용 가능성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두고 정부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세회피 우려 등을 고려해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 배당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를 시켜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고, 특히나 지금처럼 외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외화 보유액의 증대를 통해서 환율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정부안처럼 1년 한시적으로 운용한 다음에 그 운용 결과를 보고 계속 강행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차관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만약에 저희가 제안한 대로 1년 한시로 적용을 해 주신다면 이 법조문의 위치를 현재 의원님은 법인세법으로 제안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익금 100%랑 조특법에 함께 규정해서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석전문위원님은 의견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한시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한시적이니까 조특법으로 가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도 실은 앞 단계 잠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시다만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참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1년 한시고.

지금 여기서 박성훈 위원님이 제안한 것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이 좀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니까 부득이하게 그냥 처리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그때 한꺼번에 심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지금 외환시장 안정화가 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1년 한시로 해 보고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는지 또는 다른 문제는 없는지 1년 뒤에 다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1페이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52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이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아동수당의 중복 지원을 배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 대상 연령 변경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걸 합리적인 거라 다른 의견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다른 거 뭐 있어요, 차관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다만 시행시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시행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러면 수정안으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56페이지,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57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현행법 제21조제1항 1호는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면제를 규정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를 통한 외화자금 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외에서 발행하는 국내채권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개요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59페이지 첫째,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투자 증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원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금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대출시장의 다양한 상품 제공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해외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따른 외화자금의 안정적 유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환 조달을 확대하고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주택저당증권은 장기 보유를 통해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채권적 성격, 각주 33을 보면 MBS의 경우 발행시점에 확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채권적 성격이 강하고 해당 원리금에 대한 과세도 이자소득으로 처리되는 만큼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현행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고요.

중단에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의견은 현재 주택저당증권의 국외 발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국외에서 외화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해 과세 혜택이 적용될 경우 새로운 조달 수단 확보, 국내 발행 대비 50bp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 등에 따라서 정책모기지 금리인하 여력을 통해 국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재정부는 국채나 통안채 등의 외화표시채권 외에 수익증권까지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국채 등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고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일반 수익증권에까지 비과세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6년 2월 기준으로 발행주체별 외화표시채권 잔액을 보면 정부 발행 잔액은 전부 외평채로 외화표시채권 잔액 351.8조 원 중 20.4조 원으로 5.8%에 그치고 있고 통안채의 외화표시채권 잔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국채 수요에 대한 감소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60페이지, 또한 최근 국고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3.649%로 상승하는 국면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이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채권과 유사한 주택저당증권의 해외 조달 유인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저당증권은 채권적 성격이 강하고 발행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과세 특례를 확대하여 외환 유입 유도 및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증자리론 등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사업을 촉진하는 등 일반 수익증권과는 다른 공익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는 좀 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상으로 보면 이게 채권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택저당증권은 수익증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주담대를 일으킨 다음에 그걸 주금공이 사 온 다음에 이걸 그대로 채권 형태로 다시 발행하면 현재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모아서 새로운 증권을, ABS처럼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꼭 담보자산이 주담대가 아닌 나머지 일반, 예를 들어서 카드채를 갖고 ABS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건 해 줄 거냐. 즉 여러 가지 증권을, 기초자산이 다른 거에 대해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다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지 주금공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외화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있을 수 있지만 한편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물이 해외에서 얻을 수 있는 외화 조달량은 대체로 해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눠 먹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평채가 좀 더 나가거나 수은이 나가거나 공기업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전체적인 포션이 작아지기 때문에 재정부에서는 해외시장을 나갈 때 얼마나 나갈지를 약간 트래픽 컨트롤 같은 거를 하면서 잼이 안 걸리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나 또 다른 게 못 나가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가치를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국민연금이 해외 기채를 하는 걸 허용해 줄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외화 외평채도 지금 올해 50억

불로 많이 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팔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 외화 외평채도 계속 필요하고.

또 지난주에 통과한 대미투자 기금법에서도 외환보유고로 운용수익이 안 되면 해외에
서 기채하도록 하는 것도 해 났거든요. 그렇다면 해외시장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주금공이 나가는 걸 어떻게 볼 거냐도 외환시장을 보는 입
장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국내시장 파트도 고민이 필요하고 해외시장 파트
도 고민이 필요하니 이걸 좀 더 시간을 두고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기재부
의견이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와 있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주금공 나와 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국제금융처장 이재상 예, 여기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받고 주금공에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먼저 얘기 한번 들어……

○소위원장 박수영 먼저 들어 보시겠어요?

주금공 담당자 직·성명 말씀하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국제금융처장 이재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해외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금융처장 이재상입니다.

재정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MBS는 법률상 수익증권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해
진 이율로 주기적·확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지급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채권평가사, 신용평가사, 채권투자자 등 채권시장 참여자 모두 MBS를 채권
으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개정을 하더라도 최소 3개월, 6개
월 정도 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발행 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혹시 또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재정부랑 수석전문위원이 지금 반대되는 의견을 냈고 당연히 주금공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박성훈 위원 제가……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기재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일에 이
거를 해외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언더라인 에셋을 풀링하는 모든 수익
증권 형태로 다 과세를,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앞으로 국채시장도 그렇고 외화표시채
권으로 발행되는 모든 형태의 채권의 경우에는 앞으로 국채나 또는 통안채랑 서로 경쟁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모든 기초자산을 무엇으로 하는지에

상관없이 이런 ABS 형태의 채권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빗발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기관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금공이 생각하는 것 말고 우리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기재부의 입장이 조금은 더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또 우리가 지난주에 통과시킨 대미투자특별법 거기도 좀 걱정인데, 모자라면 우리가 해외에서 채권 발행하도록 규정을 넣어 놔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 부분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성훈 위원 제가 그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150억 불, 외화자산 운용수익 외에 추가적으로 50억 불 정도는 해외에서 아마 기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 오히려 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또 경쟁하는 그런 상품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보는 기재부의 입장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마 대미투자특별법이 없는 상태에서 주금공에서 낸 안이 아닌가 싶은데 대미투자특별법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더 비싸게 기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경쟁사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박성훈 위원께서 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기재부 의견대로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러니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62페이지입니다.

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 신설에 관한 안입니다. 두 가지, 박정 의원안과 정일영 의원안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박정 의원안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은 25%고, 정일영 의원안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기업 10%, 중견 20%, 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입니다.

6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적재산권의 선점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지적재산권 출원 등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영 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특허출원 건수는 매출액, 수출액, 부가가치 등 기업 성과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 기업당 해외 특허출원 1개 증가 시 개별 기업의 연평균 매출 증대 효과는 대기업이 약 5억 2000

만 원, 중소기업이 약 2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처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71.4%, 중견기업의 70.3%, 중소기업의 44.3%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등은 지식재산 활동 애로 사항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2017년 유사한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예타를 시행하였으나 타당성이 부족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제도 신설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타의 대상이었던 조세특례 제도는 국내 및 해외 특허권 등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인 반면 동 개정안은 해외 출원·특허 등록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특허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양 의원안이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을 박정 의원안과 같이 중소기업에 한정할지 정일영 의원안과 같이 중견·대기업도 포함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신중한 검토를 하자는 취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 17년에 예타를 저희가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어디에 출원하느냐보다도 이게 과연 R&D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R&D에 도움을 준다는 거는 R&D를 실제로 하기 전에 사전조사비용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R&D 할 때 도움이 되고 R&D 성과물이 나오면 기업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특허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창출 효과보다는 방어적인 효과다라고 해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R&D 세액비용에다가 이 조사비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비용은 저희가 R&D 비용의 일부로 포섭해 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출원비용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비용인데 사실 저희가 세제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자고 하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디까지 해 줄 거냐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비용은 손금 처리는 됩니다. 일단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까 주는데 추가로 더 공제를 해 주자, 두 번의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할 정도인가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고민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조세지출하고 재정지출하고를 같이 비교해서, 중복해서 비교를 하는 걸 이번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비슷한데 세제지원도 하고 재정지원도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된다. 어느 게 더 맞는지 모르겠지만 봐서 이런 제도는 재정으로, 이런 제도는 세제로 모으자는 작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것과 관련해서 재정지원이 있느냐를 살펴봤는데 아까 전에 말한 대기업은 사실은 재정지원이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고 중소기업은 어렵지만 중소기업에 관해서 특허심사지원 사업이 올해 726억 원의 본예산이 있고요. 특허재산을 활용한 창업성장 지원사업이 82억 원으로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지출을 통해서 타

기당해서 중소기업을 주고 있는데 이 세제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번에 이거 말고라도 세제 전반에서, 재정과 세제가 동시에 가는 거는 좀 정리를 할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입장은 어떠신가요? 좋은 일이긴 한데……

○윤영석 위원 제가 한말씀……

○소위원장 박수영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영석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일단 해외출원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윤영석 위원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이익이 나는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정말 필요한 기업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초기 기술 기업들은 세액공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운 후에 이걸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 안건은 정부 측 의견대로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6페이지입니다.

연결지배요건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에 관한 부분입니다.

77페이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연결지배 요건 판단을 위한 주식 등의 보유비율 계산 시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후 22년 세법 개정 이전까지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 구 법인세법 76조의8제5항에 따라 완전지배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이후 연결납세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지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를 하였습니다.

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경우 첫째, 연결자법인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을 발행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으로써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는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의 핵심 판단기준 중 하나는 의결권 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의결권 및 추가총액의 80% 이상 소유한 자법인에 대해서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단부에, 한편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현행 지분을 산정 방식에 따라 일부 자법인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결지배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는 자법인들이 추가적으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는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재정부 입장은 22년 세법 개정으로 연결지배 요건이 100%에서 90%로 완화되었으므로 사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범위 조정 여부는 일정 기간 제도 운영 후 부작용 발생 여부를 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다만 연결납세방식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기업이 제도 변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지난 정기국회 조세소위 때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 천하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때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예측하지 못한 이익과 손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서로 간에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것만 하면 현재 연결납세가 되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던 사람이 되는 걸로 포섭이 되게 되는데, 이 법은 강제 규정으로 돼 있어서 반드시 규정을 맞추면 연결납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연결납세를 하게 되면 회사 안에 결손법인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전부 다 확장하면 누진과세가 오히려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불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세무 전략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이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한번 보라고 그때 의견을 주시고 소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일은 국세청하고 협업해서 현재 연결납세체제로 신고된 곳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를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를 구분해서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예 데이터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00개 정도 되는 모법인, 자법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그게 모아지면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분석을 해 보고 저희가 이게 어떤 불측의 피해가 있는지 한번 판단하는 게 첫 번째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도 못 하는 부분은, 국세청의 포섭 범위 밖에 있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법인은…… 예측하지 못한 연결이 되는 건 저희가 데이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저희가 정부 입장을 좀 더 정해서 다시 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작년에 심의하고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지금 데이터를 개더링(gathering)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언제쯤 분석이 될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한 100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요 의결권을 또 따져 봐야 되거든요. 있는 법인, 없는 법인 이렇게 따져 봐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저희는 석 달 정도 지났으니까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안건으로 올린 것인데 기재부가 아직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니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들여서라도 분석하고 그때 안건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오늘은 일단 보류하고 준비되면 올려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82페이지, 개정안은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한국은행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첫째,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앙은행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 중앙은행이 과세소득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재정독립성이 위태로워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게 되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둘째,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납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기순이익 중 30%를 한은법에 따라 법정 적립하고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는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의무를 면제할 경우 법인세 실적이 감소하고 정부 세입으로 납부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증가하여 정부 수입이 순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4년 말 기준 한국은행 손실 보전을 위한 적립금 누적액은 20.5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법인세 면제 시 당기순이익 자체가 증가하여 법정적립금 규모가 증가되는 만큼 현행 법정적립금 비율인 30%를 하향 조정할 경우 정부 재정이 증대되므로 이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5페이지, 표를 보시면 24년 기준 한국은행 법인세 납부는 왼쪽 칸에 보시면 법인세는 2.6조 원이고 그다음에 정부 세입은 5.4조 원으로 총 8조 원의 정부재정 수입이 있었습니

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7.2조 원으로 정부재정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게 되고요. 하지만 법인세 법정적립금 비율을 20% 가정할 경우에는 8.3조 원으로 정부재정이 늘게 되고요, 10%로 가정할 경우에는 9.3조 원으로 좀 더 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면제하더라도 현행 법정적립금 비율을 한국은행법 개정 사항이기는 하지만 하향 조정할 경우 정부재정 수입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분석하신 대로 정부 부분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적립비율을 고치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일반회계로 과세로 들어오면 이게 지방재정의 교부금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과세를 하게 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지방으로 가지 않는 재원으로…… 그러니까 국세의 일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게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간의 배분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 그 부분에서 좀 더 깊은 고민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건 일반세입이면 지방교부세 19.24%인가 그게 빠져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는 그게 빠지는 총량에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국세수입의 20%가 지방재정이고……

○소위원장 박수영 십구 점 몇 %로 돼 있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또 20%가 지방교육재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지요? 오케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저는 기재부차관님, 정부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어려운 지방을 더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87페이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추가 및 손금산입 한도 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박수영·송언석 의원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합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송언석 의원안은 전통시장 등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나 이는 이미 작년 세법 개정에 따라 반영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중단입니다.

조특법 제136조제6항은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내에서 손금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상점가 등의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지출을 촉진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25년 말 세법 개정으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되었는데 온누리상품권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님 마지막 말씀처럼 작년 정기국회 조세소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추가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일단은 보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중기부랑 연락을 해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문의를 해 봤는데요. 그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서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연구용역 발주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내용을 보고 온누리상품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만 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도 함께 손금산입에 포함시켜서, 둘 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이니까 둘 다 해 줘도 문제가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거 두 개를 통합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할 때까지라도 똑같이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중기부는 용역 나가서 결과가 통합적으로 검토할 듯이 얘기하던데 그렇다면 통합되기 전까지는 같이 가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이거 한다고 해서…… 규모도 훨씬 적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때 작년 정기국회 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거는 전통시장 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상의 범위의 폭에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더 넓은 점도 같이 그때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도 온누리상품권이랑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같은 취지의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만 기업들의 업추비 손금불산입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저도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도입한다고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석전문위원님, 이거 해 준다고 해서 세수감은 또 얼마나 되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어차피 20% 상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20% 상한이 있기 때문에 세수감이 거의 없다고, 별로 미미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미미하다고 본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이거는 저번 시간에 논의했는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출을 따로 추가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하고는 중복적인 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온누리상품권이 원래 더 먼저 있었던 겁니다,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기업 업추비 일반 한도에는 들어갑니다.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거는 20% 추가 한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반 한도에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반 한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추가 한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밀착돼 있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기업 측면에서는 딱 그 한도, 한정이 있는 지역만 쓰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것을 더 선호할 수가 있는 거지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수감 효과도 없다는데 이거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아니고 기업의 업추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지요. 기업이 소비자라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기업이 상대방한테 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남한테 줄 때 특정한 지역에 줘서 그 지역에서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라니까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대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인 체인을 가진 기업 같으면 그걸 골라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온누리상품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걸 선택권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 측에서 좀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 세 번 논의하게 되는데 크게 문제도 없는데 왜 자꾸 기재부에서 반대하는지……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어쨌든 중기부에서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통폐합 용역을 추진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통폐합하면 그때 같이 통폐합하면 되잖아요, 지금 같이 가다가.

○**재정경제부세제실장 조만희** 그런데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될지 아직까지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수영** 안 나왔으니까 이럴 때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다가 통합하면 또 그대로 통합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기재부가 양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겁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93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 신설에 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정보보호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해민 의원안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에 지출한 비용, 정보보호 보험료 납부액의 1%, 중견 3%, 중소 5%를 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4페이지, 김태호 의원안은 정보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보험 가입, 전문인력 채용 등 대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30%를 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 4월 SK텔레콤이나 25년 하반기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둘째,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4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25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정보보호 정책 보유율은 98.7%, 조직 보유율은 87%에 달하는 반면 10~49명 기업은 정책 보유율이 48.9%, 조직 보유율은 2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1년 518건에서 24년 1575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24년도 전체 신고 건수의 약 83.5%가 중소기업 신고 건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침해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재경부는 정보보호는 기업의 기본적 책무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정부가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 여력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까 전에 했던 특허출원하고 비슷한 취지의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공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컨설팅 보험료 지원인데 이 부분도 여전히 소모성 비용으로서 현재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조세 지원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문제는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지만 결국 현재로서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책무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굉장히 존립의 위기까지 오는 상황이라고 해서 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기형 위원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대기업들은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세액공제를 해 준다고 그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나 인력공제 이런 거 해 줘도, R&D 인력공제 이런 거 아십니까? 그런데 중소기업 이하로는 돈이 없어서 그 투자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보보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걸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과기부랑 협의를 해 봤는데 과기부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보보호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서 보안을 좀 더 지원하겠다는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세제지원을 받을 소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일정 부분 결손 중소기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재정지출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글썽요, 맨날 세제에서 어려워지면 재정으로 풀어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가서는 또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기재부가.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기재부에서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사태 알지 않습니까. 슈퍼 301조까지 지금 거론될 정도로 쿠팡의 정보 유출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쿠팡만 해도 대기업인

데 중소·중견으로 가면 정말 어려워서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인센티브를 좀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정부 측에서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몇 건 남았습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 아니에요? 관세법 이하는 다음 주에 소위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간사님이 하신 거라서 내가 얘기를 하자니 참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관련인데 제가 이 업무를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상품권은 대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라는 것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그걸 선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데가 대개 대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쪽에 훨씬 더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혜택을 주게 됐을 때 오히려 수도권에 쏠 몰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있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게 아니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쓰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과 가로형 상점가라고 돼 있거든요.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상점가인데 문제는 이게 회사에서 결국 선물로 직원들한테 나눠 주게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이걸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으로 보면 차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지역상품권이 지역 문제와 소상공인이 사는 데 유효한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중소벤처부에서도 이걸 좀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제도 개선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몇 개월 정도 기다려 주면 어떨까 싶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아직 발주도 안 했기 때문에 한 1년 넘어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중기부 발주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조만간 발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직 발주 안 했다고 내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장 이영주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요 곧 할 거라고 저희는 전달 받았습시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아직 발주도 안 했는데 발주해 가지고 연구하고 언제 결론이 나올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또 정태호 간사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이것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논의하게……

○정태호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중기부 입장도 정확하게 받아 보고요. 수도권이라도 수도권에 있는 전통시장과 가로형 상점가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위원장님, 2권에 41페이지 이 부분은 RIA 계정하고 과생상품 과세특례 됐을 경우에 세트로 나가는 건데 이걸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소위원장 박수영 이거 아까 그냥 넘어갔군요. 지금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이 부분 주요 내용은 국내시장 복귀계좌하고 환율변동위험회피 과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화되는 것을 전제로 동 조세특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및 환해지 과생상품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감면함으로써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건 서택스, 그러니까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니까 앞의 RIA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하는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한 분이 안 오시면…… 진도 나갈까요, 남은 것? 1개라도 더 할까요, 관세법?

(「예, 그렇시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는데……

○오기형 위원 빨리 연락을 해서……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일단 연락은 보좌진에서, 전문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우리는 관세법을 진행합시다. 1개라도 더 하면 다음에 시간을 절약할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06페이지입니다.

33번,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 시 2년 내 재공인 불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현행 관세법 제255조의2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 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우수업체로 공인한 업체에 대해 수출상대국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109페이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공인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는 등의 사유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는 고의성이 높아 공인 취소만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치 않을 수 있어 재공인 제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둘째, AEO는 통관상 혜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공인 자체의 신뢰가 핵심인데 부정 취

득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바로 채공인이 가능하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입법례상 취소를 받은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간 보세구역 설치나 결격 사항을 규정한 입법례가 많으므로 다른 입법례와 같이 2년 이내에 채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관세법령상 기타 특혜 제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13페이지,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자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 중 선의의 체납자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체납자 판단 기준은 서금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직전 5년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신청일 현재 조세범처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개정 효과는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걸로 기대가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접근성이 높으므로 보다 많은 채무자들에 대해 개정안에 따른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의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상환 의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징수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상자의 체납세금 상환 의지를 제고하고 세수 확보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협약에 따라서 금융회사, 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체납자의 회생 기회가 부여되나 국세의 체납징수 특례 없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채무조정대상자에 대한 세금을 면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연가산세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납을 허용하려는 것인 점, 선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 관련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회생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래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징수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의 경우에 재기중소기업이나 영세개인사업자 징수특례를 통해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나 분납 허가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기 노력 없이 일괄적으로 징수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이슈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논의해 주셔서 통과시킨 내용 중에 폐업한 무재산자의 경우에 징수 곤란한 채납액 5000만 원 이하까지는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까지 함께 시행된 점을 볼 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의견대로 일단 보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나 소위 일정을 간사 간 협의해서 잡을 때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잠정 합의만 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2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훈 위원님만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33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은 끝났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자구 정리……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22번 항목 의결……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20, 22 같이 했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같이 했습니까? 예.

○소위원장 박수영 예, 20항과 22항 같이 했습니다. 통합 조정해서 대안으로 내기로 아까 같이 의결했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자구 수정은 위임해 주시는 걸로 제가……

○소위원장 박수영 자구 수정 지금 읽으려고 하는 때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내용에 대한 자구 수정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일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영환 박성훈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정태호 최기상

○청가 위원(3인)

정일영 천하람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건영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관세정책관 최재영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

법인납세국장 심욱기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제금융처장 이재상